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98호**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 선<br>람 | 기관의 장 |
|--------|-------|
|        |       |

| 공 고         |          |                                                         |               |
|-------------|----------|---------------------------------------------------------|---------------|
| ○ 공 고       | 제 1067 호 |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도시디자인과 2      |
| ○ 공 고       | 제 1068 호 |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도시디자인과 21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35 호   |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34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36 호   |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43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37 호   |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54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38 호   |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63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39 호   | 「남동구 아동비밀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72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40 호   |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84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41 호   |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94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42 호   |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103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43 호   |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114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44 호   |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126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45 호   |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139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46 호   |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150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47 호   |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161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48 호   |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169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49 호   |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은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81  |
| ○ 의회사무국 공 고 | 제 50 호   | 「남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192 |
| 고 시         |          |                                                         |               |
| ○ 고 시       | 제 88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운연동 중로3-69호선 외 2개노선) 실시계획인가 및 결정 실효           | 도 시 재 생 과 202 |

| 회<br>람 |  |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1067호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국내 환경표지인증에서 산화생분해 소재가 미세 플라스틱 발생으로 친환경 소재에서 제외되고 있어 친환경 현수막 소재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 소재 정비 : ‘산화생분해’ 삭제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연 락 처 : 전화 453-2282, FAX 453-283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제2021-164)」 끝.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석유계 플라스틱에 촉진제를 섞어 분해되게 하는 제품이나, 완전 분해가 되지 않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국내 환경표지인증에서도 제외하고 있어 친환경 소재에서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친환경 소재 정비 : (안 제2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3항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제2021-164)」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산화생분해”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생략)<br>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br>3. (생략)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현행과 같음)<br>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br>3. (현행과 같음) |

## [참고자료]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①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같은 법 시행령 제2호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은 제외한다)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1. 10. 28.>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대상 제품별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환경표지 인증기준

## 생분해성 수지 제품

## Biodegradable Resin Product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단일 재질 또는 2종 이상의 생분해성 수지를 원료로 하여 성형 제조한 제품(이하, “성형 제품”이라 한다.)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성형 원료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별도의 인증기준이 정해져 있는 제품은 제외한다.

**비고**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품’ 또는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ISO 2602, 시험결과와 통계적 해석 — 평균의 추정 — 신뢰구간

KS M 0016, 원자 흡수 분광 광도 분석 방법 통칙

KS M 0032,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 방법

KS M ISO 14855-1, 퇴비화 조건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호기성 생분해도의 측정 —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분석에 의한 방법 — 제1부: 일반적 방법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그 밖에는 KS M ISO 14855-1에서 정한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생분해성 제품**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지가 생분해성 수지로만 이루어진 제품

**비고** 수지에는 식물유래 수지, 천연 유기재료 및 화학적 방법 또는 미생물을 이용한 합성수지 등이 포함된다.

**3.2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 통상의 수지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분해 되는 수지



### 3.3 식물유래 수지

식물에 의하여 생산된 유기물을 원료로 제조되는 수지

### 3.4 천연 유기재료

천연에 존재하는 유기재료로 생분해가 되는 것

### 3.5 호기성 최종 생분해(ultimate aerobic biodegradation)

호기성 조건에서 고분자물질을 포함한 유기화합물이 미생물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 물, 무기염류 및 새로운 생물량(biomass)으로 전환되는 것

### 3.6 생분해도

KS M ISO 14855-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호기성 최종 생분해에 의하여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누적량을 이용하여 같은 규격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평균 생분해도 값

### 3.7 표준물질

입자의 크기가 20  $\mu\text{m}$  이하인 TLC 등급의 셀룰로오스를 사용하며, 생분해성 수지의 생분해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양성대조 물질

### 3.8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품

의도적으로 야외 등에 설치되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설치·사용되는 제품

### 3.9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제품

사용 후 오염이 발생하여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 또는 경박단소하여 분리수거의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

## 4 환경 관련 기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 전과정 단계   | 환경성 항목             | 환경 개선 효과     |
|----------|--------------------|--------------|
| 원료취득     | -                  | -            |
| 제조       | ▪ 수지 사용 비율         | ▪ 자원 절약      |
|          | ▪ 생분해성 수지 사용률      | ▪ 생태계 독성 감소  |
|          | ▪ 수지 첨가제 및 유해원소 함량 |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          | ▪ 사용 금지 원료         | ▪ 유해물질 사용 감소 |
| 유통·사용·소비 | -                  | -            |
| 폐기       | ▪ 생분해도             | ▪ 생태계 독성 감소  |
| 재활용      | -                  | -            |

#### 4.1 수지 사용 비율

제품의 구성 재료 가운데 수지를 질량분율로서 70 %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수지 이외의 구성 재료는 일반인이 특별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수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 4.2 생분해성 수지 사용률

제품의 구성 재료 가운데 수지는 생분해성 수지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수지 내에

함유된 무기첨가제와 유기첨가제(안정제, 계면활성제, 안료 등)는 생분해성 수지로 본다.

#### 4.3 수지 첨가제 및 유해원소 함량

수지의 첨가제로서 납(Pb) 화합물이나 카드뮴(Cd)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수지에 함유된 유해원소는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수지의 유해원소 함량 기준

| 항목         | 비소<br>(As) | 납<br>(Pb) | 카드뮴<br>(Cd) | 수은<br>(Hg) | 크로뮴<br>(Cr) | 구리<br>(Cu) | 니켈<br>(Ni) | 아연<br>(Zn) |
|------------|------------|-----------|-------------|------------|-------------|------------|------------|------------|
| 기준 (mg/kg) | 25 이하      | 50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150 이하      | 200 이하     | 25 이하      | 500 이하     |

#### 4.4 사용 금지 원료

식품 또는 식품 원료와 접촉되는 용기·기구·포장 제품이나,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제품은 수지의 원료로서 다음의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a)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대한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 따라 표 3의 H코드 분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비고 각 물질 목록은 EU Regulation(EC) No. 1272/2008 부속서 VI의 Part 3(Harmoniz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tables)을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표 3 UN GHS에 따른 EU CLP 분류·표시 코드 및 세부내용

| 코드                                                 | 세부 내용                                                                     |
|----------------------------------------------------|---------------------------------------------------------------------------|
| toxic substances:                                  |                                                                           |
| H310                                               | fatal in contact with skin                                                |
| H330                                               | fatal if inhaled(gas, vapour, dust/mist)                                  |
| allergies substances:                              |                                                                           |
| H334                                               | may cause allergy or asthma symptoms or breathing difficulties if inhaled |
| carcinogenic, mutagenic and reprotoxic substances: |                                                                           |
| H340                                               | may cause genetic defects                                                 |
| H350                                               | may cause cancer                                                          |
| H350i                                              | may cause cancer by inhalation                                            |
| H351                                               | suspected of causing cancer                                               |
| H360F                                              | may damage fertility                                                      |
| H360D                                              | may damage the unborn child                                               |
| H361f                                              | suspected of damaging fertility                                           |
| H361d                                              | suspected of damaging the unborn child                                    |
| H362                                               | may cause harm to breast-fed children                                     |

- b)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발암성 분류 기호로써 'Group 1', 'Group 2A' 및 'Group 2B'에 해당하는 물질. 다만, 흡입 우려가 없는 카본블랙과 이산화티타늄( $\text{TiO}_2$ )은 제외한다.
- c) EU Regulation(EC) No. 1272/2008 부속서 V에 따라 지정된 위험 심별을 제품 전체에 표시할 필요성이 생기는 물질
- d) EU Regulation(EC) No. 1272/2008 부속서 V에 따라 H317을 제품 전체에 표시할 필요성이 생기는 물질

#### 4.5 생분해도

제품을 구성하는 수지에 대하여 해당 표준에 따라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최종 생분해도 값은 표준물질에 대한 최종 생분해도 값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재료별로 생분해성 시험을 실시할 때는 각각의 재료가 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a) 또는 b)에 적합할 때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비고** 해당 재료의 총량이 제품 전체의 5 % 이하인 것으로서 각각의 재료 사용량이 1 % 미만의 재료 및 무기계 첨가제에 대하여는 생분해성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 a) 초기 45일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생분해도 값이 표준물질에 대한 생분해도 값의 60 % 이상이며, 이 시점에서도 생분해가 지속되어 뚜렷한 생분해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을 때
- b) 180일 동안 배양하여 측정한 생분해도 값이 표준물질에 대한 최종 생분해도 값의 60 % 이상이며, 이 시점에서도 생분해가 지속되어 뚜렷한 생분해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다만, 봉투 등 필름 형태의 제품 및 1회용 식품 기구·용기·포장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 생분해도 시험물질은 성형제품[원료는 펠릿(pellet) 또는 예상되는 최종 제품의 대표적인 형태로 만든 것]으로부터 취하여야 하며, 이를 동결 분쇄한 다음 KS A 5101-1에 따른 호칭 눈 크기 250  $\mu\text{m}$ 인 시험용 체를 통과한 분말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품질 관련 기준

### 5.1 성형 원료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성형 원료 품질은 신청인이 제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필요할 때는 구매자의 요구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5.2 1회용 식탁보

1회용 식탁보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a) 제품의 평균 두께,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는 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제품의 평균 두께,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 기준

| 항목                        | 기준            |
|---------------------------|---------------|
| 평균 두께                     | 제시 값의 90 % 이상 |
| 인장강도 (N/mm <sup>2</sup> ) | 10 이상         |
| 인열강도 (N/mm)               | 20 이상         |

- b) 제품의 유해원소 용출량은 표 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제품의 유해원소 용출량 기준

| 항목     |           | 기준 (mg/L) |
|--------|-----------|-----------|
| 전분 미함유 | 납         | 1 이하      |
|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
|        | 증발잔류물     | 30 이하     |
| 전분 함유  | 비소        | 0.1 이하    |
|        | 납         | 1 이하      |
|        | 폼알데하이드    | 4 이하      |
|        | 형광증백제     | 불검출       |

### 5.3 생분해성 봉투

생분해성 봉투(종량제 봉투 제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a) 제품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표 6에 적합하여야 한다. 접착하지 않거나 접지 않은 부분의 가로·세로방향에 대하여 각각 산출한다.

표 6 제품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 기준

| 항목                        |    | 기준     |
|---------------------------|----|--------|
| 인장강도 (N/mm <sup>2</sup> ) | 세로 | 22 이상  |
|                           | 가로 | 18 이상  |
| 신장률 (%)                   | 세로 | 100 이상 |
|                           | 가로 | 100 이상 |

- b) 제품의 평균 두께는 제품의 신청인이 제시한 값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 c) 제품의 용량 및 내구성은 표 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7 용량 및 내구성 기준

| 시험 항목     | 기준                 |
|-----------|--------------------|
| 용량        | 제시 값의 $\pm 3$ % 이내 |
| 정적 부하 내구성 | 파손 등의 이상이 없을 것     |
| 동적 부하 내구성 |                    |

### 5.4 품질 및 성능

5.4.1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이 있을 때는 해당 표준의 품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4절 (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한다.

5.4.2 5.4.1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른 표준에 대한 품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 및 성능기준에서 4절 (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한다.

-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 해당 제품 품질에 대한 해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5.4.3 5.4.1 또는 5.4.2를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신청인은 해당 제품의 산업 분야에서 국가표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단체표준 등의 품질 및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제시 표준 및 성능기준 적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 및 성능기준에서 4절 (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한다.

## 6 소비자 정보

### 6.1 인증사유

제품의 인증사유를 카탈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환경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6.2 폐기할 때 주의사항

사용 후 폐기할 때 재활용 대상 합성수지와 함께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6.3 제품 보관 및 사용 방법

사용설명서 등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a)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한 제품이며, c)에 기재한 사항을 준수하면 생분해 된다’는 내용
- b) 적정하게 사용했을 때 제품으로 의도한 기능이 계속 발휘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 c) 제품의 올바른 사용 장소 및 방법(조경 녹화용 자재는 공법 포함). 유통 과정에서 물성 변화가 발생할 때는 해당 근거와 조건을 기재할 것

## 7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8과 같다.

표 8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 인증기준 항목                                                                                                                                                                                                                                                      |         | 검증방법                                      |
|--------------------------------------------------------------------------------------------------------------------------------------------------------------------------------------------------------------------------------------------------------------|---------|-------------------------------------------|
| 환경<br>관련<br>기준                                                                                                                                                                                                                                               | 4.1~4.2 | 제출 서류 확인                                  |
|                                                                                                                                                                                                                                                              | 4.3     | 제출 서류 확인 및 8.4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 4.4     | 제출 서류 확인                                  |
|                                                                                                                                                                                                                                                              | 4.5     | 8.5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
| 품질<br>관련<br>기준                                                                                                                                                                                                                                               | 5.1     | 해당 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
|                                                                                                                                                                                                                                                              | 5.2     | a) 8.1 및 8.2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         | b) 8.6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 5.3     | 8.1 및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 5.4     | 해당 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
| 소비자 정보                                                                                                                                                                                                                                                       |         | 제출 서류 확인                                  |
| <b>비고</b> 성형 제품에 대하여는 부속서 A에서 정한 ‘생분해성 수지의 재질 특성에 대한 간이 시험방법’에 따라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성형 원료 또는 동등 이상의 생분해도 인증을 받은 성형 원료만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할 때는 인증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4.3 및 4.5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른 생분해도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                                           |

## 8 시험방법

### 8.1 일반사항

- a)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할 때에는 시험 시료를 추가할 수 있다.
- b)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출하 대기 상태의 제품 중에서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무작위 채취한다.
- c) 시험 결과는 KS Q 5002에 따라 개별 기준 값의 자릿수에 1 이상을 더한 자릿수로 수치를 맺는다. 다만, 시험방법에 수치맺음 자릿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맺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8.2 생분해성 식탁보의 두께, 인장강도 및 인열강도 시험방법

### 8.2.1 시험편

시험편은 식탁보의 근사적 중앙부와 절단면의 5 mm 이상 떨어진 각 모서리에서 가로방향으로 총 5개를 채취한다.

### 8.2.2 인장강도와 인열강도

인장강도와 인열강도는 별도의 식탁보를 대상으로 하되, 시험 결과는 산술평균값으로 나타낸다. 필요한 때는 KS A ISO 2602에 따라 평균값의 표준편차 및 확률 95 %의 신뢰구간을 구한다.

### 8.2.3 치수, 단면적, 두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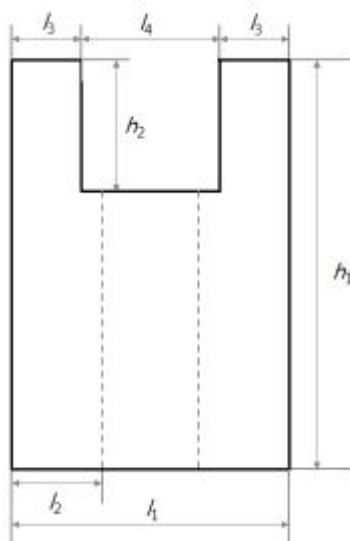
치수는 시험편의 중앙과 표점 거리의 각 끝으로부터 5 mm 이내에서 각각 측정하며, 시험편의 단면적은 측정결과의 평균값들을 이용한다. 다만, 두께는 강도시험을 실시한 전체 시험편에 대한 산술평균값으로 나타낸다.

## 8.3 생분해성 봉투(종량제 봉투 제외) 시험방법

### 8.3.1 봉투의 기본 모양

봉투의 기본 모양은 원칙적으로 다음 그림 1에 따르되, 운반을 위한 손잡이를 기본으로 한다.

(단위: mm)



- $l_1$ : 전체 폭
- $l_2$ : 접힌 부분의 폭
- $l_3$ : 손잡이 폭
- $l_4$ : 재단 폭
- $h_1$ : 전체 길이
- $h_2$ : 재단 길이

<용량 계산>

$$\text{용량}(L) = \frac{L^2}{\pi} \cdot \left[ H - \frac{L}{\pi} \right] \cdot 9 \cdot 10^{-7}$$

다만,

$$H = (h_1 - h_2), L = (l_1 + 2 \cdot l_2)$$

그림 1 제품의 기본 구조 용량 계산방법

### 8.3.2 용량 구분

용량 구분은 표 9에 따르되, 허용오차는 신청인이 제시한 값의  $\pm 3\%$  이내이어야 한다.

표 9 제품의 용량 구분

| 기호 | 명칭  | 용량 V (리터)           |
|----|-----|---------------------|
| A  | 대형  | $V \geq 23$         |
| B  | 중형  | $17 \leq V \leq 22$ |
| C  | 소형  | $9 \leq V \leq 16$  |
| D  | 초소형 | $V < 9$             |

### 8.3.3 동적 부하 내구성 및 정적 부하 내구성

동적 부하 내구성 및 정적 부하 내구성은 다음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시험은 5개의 봉투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험 과정에서 2개 이상이 파손되면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1개만 파손된 때는 추가 시험을 진행하여 파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 정적 부하 내구성 시험: 표 10의 정적 부하 내구성 시험부하에 해당하는 마른 모래를 채운 후, 지름  $40 \text{ mm} \pm 5 \text{ mm}$ 의 원형 막대로 손잡이 부분 중앙을 지지하는 상태로 6시간 동안 유지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동적 부하 내구성 시험: 표 10의 동적 부하 내구성 시험부하에 해당하는 마른 모래를 채운 후, 밑면이 바닥에서 300 mm 높이가 되도록 끝으로 고정시켜 시료의 움직임이 방해받지 않게 한다. 끈은 폭  $100 \text{ mm} \pm 5 \text{ mm}$ , 길이 1 m 이상의 천 또는 가죽 소재로 하며, 전체 폭이 손잡이 중앙 부분을 자연스럽게 지지하도록 한다. 시험 시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끈을 당겨 고정 위치보다 200 mm 위로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자유 낙하시켜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표 10 시험용 부하 기준

| 기호 | 시험용 부하 기준 (kg)                                                |                   |
|----|---------------------------------------------------------------|-------------------|
|    | 정적 부하 내구성                                                     | 동적 부하 내구성         |
| A  | 15                                                            | 7.5               |
| B  | 10                                                            | 5.0               |
| C  | 6                                                             | 3.0               |
| D  | 용량의 40 %에 상응하는 질량                                             | 용량의 20 %에 상응하는 질량 |
| 비고 | 용량의 소수점 이하는 정수로 올려 계산(예: 5.3 L = 6 L)하며, 부하는 소수점 아래 첫 자리로 한다. |                   |

### 8.3.4 평균 두께, 인장강도 및 신장률

평균 두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방법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KS M 3001에 따른다.

- 하나의 봉투에서 근사적 중앙부를 기준으로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의 시험편을 각각 1개씩 채취한다.
- 시험편은 가로 및 세로방향의 각각 5개씩 총 10개로 하며, 시험 결과는 산술 평균 값으로 나타낸다. 필요한 때는 KS A ISO 2602에 따라 평균값의 표준편차 및 확률 95 %의 신뢰구간을 구한다.
- 치수는 시험편의 중앙과 표전 거리의 각 끝으로부터 5 mm 이내에서 각각 측정하며, 시험편의 단면적은 측정결과의 평균값들을 이용한다. 다만, 두께는 총 10개에 대한 산술평균값으로 나타낸다.

### 8.4 수지 첨가제 및 유해원소 함량

KS M 0016, KS M 0032에 따라 시험한다.

### 8.5 생분해도

KS M ISO 14855-1에 따라 시험한다.

### 8.6 제품의 유해원소 용출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 9 인증사유

| 인증사유<br>범주 구분                                                                                                                                                                                                                                                                                                                       | 자원순환성<br>향상 <sup>a</sup> | 에너지<br>절약 <sup>b</sup> | 지구<br>환경오염<br>감소 <sup>c</sup> | 지역<br>환경오염<br>감소 <sup>d</sup> | 유해물질<br>감소 <sup>e</sup> | 생활<br>환경오염<br>감소 <sup>f</sup> | 소음·진동<br>감소 <sup>g</sup> |
|-------------------------------------------------------------------------------------------------------------------------------------------------------------------------------------------------------------------------------------------------------------------------------------------------------------------------------------|--------------------------|------------------------|-------------------------------|-------------------------------|-------------------------|-------------------------------|--------------------------|
| 해당 여부                                                                                                                                                                                                                                                                                                                               |                          |                        |                               | ●                             | ●                       |                               |                          |
| <sup>a</sup>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유효자원 재활용 등<br><sup>b</sup>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br><sup>c</sup>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등<br><sup>d</sup>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가<br>잘 됨 등<br><sup>e</sup>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br><sup>f</sup>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등<br><sup>g</sup> 저소음, 진동 감소 |                          |                        |                               |                               |                         |                               |                          |



## 부속서 A (규정)

# 생분해성 수지의 재질 특성에 대한 간이 시험방법

## A.1 개요

이 규정에서는 성형 제품이 생분해성 수지제 성형 원료와 동일한 생분해성 재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여기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 이내의 시험 분석 결과가 미리 등록된 성형 원료의 시험 분석 결과와 동등함을 입증함으로써 성형 제품의 생분해도가 성형 원료와 마찬가지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된 4가지 시험방법이 성형 제품의 생분해도가 성형 원료와 동일함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 A.2 동일 재질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

### A.2.1 TGA(Thermogravimetric Analyzer)를 이용한 시험

이 방법은 전분이 함유된 지방족 폴리에스터(aliphatic polyester, AP) 수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시료는 생분해도 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성형 제품에서 채취한다. 5개소 이상의 각 부분에서 5 mg ~ 10 mg의 일정 크기로 채취하여 고르게 packing한 후 질소분위기 하에서 105 °C까지 승온한 다음 5분간 유지하여 시료 내의 수분을 제거한다.
- 건조된 시료를 질소 분위기 하에서 10 °C/min의 승온 속도로 600 °C까지 승온하여 열중량 곡선을 얻는다.

**보기** 전분이 함유된 지방족 폴리에스터 수지는 전분의 함량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취한 후 반올림하여 상수자리로 계산한다.

$$\text{전분 함량 [무게분율(\%)]} = \frac{\text{전분 분해량}}{\text{전체량} - \text{잔사량}} \times 100$$

이때, 전분 분해량은 열중량 곡선을 미분하여 얻은 미분곡선(derivative curve)의 전분의 초기분해 시작점( $W_i$ )과 지방족 폴리에스터의 분해가 시작되는 바탕선의 중간지점( $W_f$ )으로부터 계산한다.

### A.2.2 용출법(Extraction Method)에 따른 지방족 폴리에스터의 함량 분석

이 방법은 지방족 폴리에스터 수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시료는 생분해도 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성형 제품에서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를 0.5 cm × 0.5 cm 이하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로 자른 후 열풍식 건조기(적정 온도)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다.
- 건조된 시료를 각 5 g씩 채취하여 정확히 질량을 달아 셀룰로오스 필터(추출용 thimble)에 넣고, 미리 질량을 잰 250 mL 넓적바닥 플라스크( $W_1$ )에 클로로포름 200 mL를 넣은 다음 속슬렛 추출기 및 냉각기를 설치한다.
- 수욕조의 온도를 80 °C의 온도로 유지시키면서 24시간 동안 추출을 실시한다.

- d) 24시간 추출한 후 넓적바닥 플라스크를 떼어내어 내부의 용액 중의 클로로포름을 회전농축증발기를 사용하여 증발시킨다.
- e) 다시 증발된 플라스크 내용물을 열풍 건조기에서 105 °C의 온도로 1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 f) 건조된 각 플라스크 질량( $W_2$ )을 잰 뒤 내부의 내용물만의 질량( $W_2 - W_1$ )을 계산하여 기록한다.
- g) 지방족 폴리에스터(AP)의 함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text{AP 함량[질량분율(\%)]} = \frac{W_2(\text{g}) - W_1(\text{g})}{\text{원 시료의 질량(g)}} \times 100$$

여기서,  $W_1$ : 미리 잰 250 mL 넓적바닥 플라스크의 질량  
 $W_2$ : 건조된 각 플라스크 질량

### A.2.3 FTIR 분광계(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를 이용한 시험

- a) 시료는 생분해도 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성형 제품에서 채취한다. 5개소 이상의 각 부분에서 3 cm × 3 cm(가로×세로)의 크기로 채취하고, 이 가운데 무작위 채취한 3개의 시편을 열풍 건조기(적정 온도)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 내에서 서랭시킨다.

**비고** 제품에 안료 등과 같이 FTIR 스펙트럼을 방해하는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이 필름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편을 제작한다.

1. FTIR 스펙트럼을 방해하는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필름 형태가 아닌 시료 시료를 2차 전이점 이상의 온도에서 크로믹 도금한 금속판 위에서 압축시켜 필름 형태로 만들거나 용매로 용해하여 금속판이나 NaCl 판, KCl 판 위에 칠하여 용매를 날려 보낸 다음 이를 시편으로 한다.
  2. FTIR 스펙트럼을 방해하는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는 시료 시료를 용매로 용해하고 원심분리하여 고형분을 제거한다. 여기에 다시 적당한 용제를 가하여 첨가제를 용해하고 침전제를 가하여 가능한한 순수한 폴리머만을 분리한 다음, 상기 1에 규정된 방법으로 필름을 만들어 시편으로 사용한다.
- b) FTIR 분광계는 질소가스 분위기로 안정화시킨 다음 파동수 4000  $\text{cm}^{-1}$  ~ 400  $\text{cm}^{-1}$ 에서 바탕선을 정확히 맞춘다.
  - c) 건조된 각 시편에 대한 FTIR 흡수스펙트럼을 구한 다음, 수지 종류별 표준 흡수스펙트럼 등과 비교한다.

### A.2.4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을 이용한 시험

- a) 시료는 생분해도 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성형제품에서 채취한다. 5개소 이상의 각 부분에서 5 mg ~ 10 mg의 일정 크기로 채취하여 채취한 시료의 합이 약 40 mg이 되도록 하고, 이를 고르게 packing한 후 열풍 건조기(적정 온도)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터 내에서 서랭시킨다.
- b) 건조된 시료를 중수소화된 트리클로로메탄( $\text{CDCl}_3$ ) 용매에 녹인 다음, 이 용액으로부터 주파수 250 MHz 이상인 수소 NMR을 사용하여 NMR 스펙트럼을 얻는다. 시료가 중수소화된 트리클로로메탄에 잘 녹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중수소화된 용매 중에서 적당한 용매를 사용하여도 좋다.

- c) NMR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시료의 화학구조식을 추정하고, 이 시료가 단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혼합물인지를 판별한다. 혼합물로 판단되는 경우, 비분해성 수지가 나타내는 특성 신호가 나타나는지 등을 검토하고,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적절한 신호를 기준으로 비분해성 수지의 비율을 추정한다.

### A.3 동일 재질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 A.3.1 성형 제품 제작용 생분해성 수지 원료의 등록

EL724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성형 원료 제조자는 성형 제품 제작자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할 때 EL724에 따른 **4절** (환경 관련 기준)에서 정한 **4.3, 4.5**기준에 적합함을 **부속서 A**에 따라 입증할 수 있도록 **부속서 A, A.2.1~A.2.4**에 따른 재질 관련 시험 결과 자료를 인증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생분해성 성형 제품 제작용 원료로서 등록하여야 한다.

#### A.3.2 성형 제품 제작자의 원료 사용

성형 제품 제작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성형 원료(인증수탁기관에 등록된 원료)만을 사용하여 성형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 A.3.3 동일 재질 여부 확인

- a) 제작된 성형 제품에 대하여 **부속서 A, A.2.1~A.2.4**에 따른 재질 관련 시험 가운데 2개 이상의 시험 결과 자료를 인증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b) a)의 재질 관련시험 항목은 인증수탁기관의 장이 선정하며, 이들 항목에 대한 시험 결과는 인증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원료의 시험 결과 자료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여야 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5-1068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과 심의사항에 따른 처리기간 및 이의제기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상위법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신고 제외 대상 광고물 일부 삭제 (안 제4조제3호)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정비 (안 제15조제2항제1호)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안 제16조제1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처리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 (안 제16조제6항, 제7항)
- 공공게시시설 위탁 예외 규정 신설 (안 제21조제2항)
- 현행 용어체계에 따른 명칭 정비 (별표3)
- 공공게시시설 사용료 조정 및 일할계산 단서 신설 (별표9)
  - 시민게시판 사용료 인하 : 15일 / 2,000원 → 15일 / 1,000원
  -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A, B급지 사용료 일할계산 단서 신설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연 락 처 : 전화 453-2286, FAX 453-283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 4.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32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끝.

##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 제안이유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과 심의사항에 따른 처리기간 및 이의제기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상위법 위임 범위를 일탈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변경신고 제외 대상 광고물 일부 삭제 (안 제4조제3호)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정비 (안 제15조제2항제1호)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안 제16조제1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처리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 (안 제16조제6항, 제7항)
- 공공게시시설 위탁 예외 규정 신설 (안 제21조제2항)
- 현행 용어체계에 따른 명칭 정비 (별표3)
- 공공게시시설 사용료 조정 및 일할계산 단서 신설 (별표9)
  - 시민게시판 사용료 인하 : 15일 / 2,000원 → 15일 / 1,000원
  -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A, B급지 사용료 일할계산 단서 신설

### ☐ 본 문 : “별첨”

###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32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한다**”를 “**하며,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표 3,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제26조제1항 관련)**I. 보상금 지급기준**

| 광고물 종류                           | 면적(크기)      | 기준   | 지급액    | 비 고 |
|----------------------------------|-------------|------|--------|-----|
| 현수막                              | 일반형         | 1면   | 1,000원 |     |
|                                  | 족자, 깃발형 현수막 | 1면   | 500원   |     |
| 벽 보 · 전 단<br>음란, 퇴폐성<br>청소년유해광고물 | A4용지 초과     | 100매 | 3,000원 |     |
|                                  | A4용지 이하     | 100매 | 2,000원 |     |

**II.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 남동구 전지역
2. 수거보상 신청자격 : 남동구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주민 및 등록단체
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

| 수 거 보 상 대 상                                                                                                                                                                                                               | 제 외 대 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웬스 등)에 걸린 <b>불법 현수막</b></li> <li>•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b>불법 벽보</b>(건물벽면 포함)</li> <li>• 도로 등에 살포된 <b>불법 명함식 전단</b>(불법대출, 음란성광고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li> <li>•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li> <li>• 행정용·선거용·그 밖에 협의된 광고물</li> <li>•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li> <li>• 아파트단지 및 현관내부 부착광고물</li> <li>• 신문지 전단지</li> <li>• 타 구지역 배포 광고물</li> </ul> |

**4. 보상금 신청**

가. 신청기간 : 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남동산단지원사업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다. 지 참 물 : 신분증, 통장사본, 사진자료(현수막의 경우에 한함), 수거광고물

**5. 보상금지급** :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 은행계좌로 지급

[별표 9]

공공게시시설 사용료(제32조 관련)

| 구 분                    | 사용료            | 비 고    |
|------------------------|----------------|--------|
| 현수막지정게시대(1건당)          | 10일 / 8,000원   | 부가세 별도 |
|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A급지(1개 소당) | 1개월 / 150,000원 | 부가세 별도 |
|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B급지(1개 소당) | 1개월 / 100,000원 | 부가세 별도 |
| 시민게시판(1개 소당)           | 15일 / 1,000원   | 부가세 별도 |
| 시민게시판 상단(1개 소당)        | 1개월/30,000원    | 부가세 별도 |

※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급지 사용료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br>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br>1. 2. (생략)<br>3. <u>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 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u>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br>-----<br>-----<br>-----<br>-----<br>-----.<br>1. 2. (현행과 같음)<br><u>&lt;삭 제&gt;</u>                                                                 |
|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br>② 영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한다.<br>1.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으로 <u>한다</u><br><br>2. ~ 4. (생략)<br>③·④ 삭제<br>⑤ ~ ⑦ (생략)               |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1. -----<br>----- <u>하며,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u><br>2. ~ 4. (현행과 같음)<br><br>⑤ ~ ⑦ (현행과 같음) |
| 제16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 제16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건물 2층 이상의 유리벽면에 표시되는 벽면이용간판 등

6.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제21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① (생략)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  
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  
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공  
공게시시설의 명칭·수량·위  
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⑨ (생략)

② -----  
-----  
-----  
-----  
-----  
-----  
-----  
-----  
-----  
-----  
----. 다만, 시 또는 구·군이 설  
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  
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경  
우는 예외로 한다.

③~ ⑨ (현행과 같음)

##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광고물등의 규격
- 2. 사용자재
- 3. 광고내용
-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 ⑥항 생략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② ~ ⑧항 생략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35호

##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 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유광희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12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유광희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외 2명

### ☐ 제안이유

- 남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으로써 정보화시대에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제2항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 제13호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7조(추진사업), 제8조(위탁 및 지원) 등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발생 예상.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을 추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식 개선사업』 및 ‘정보통신과’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으로 본 조례가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함.

작성자 : 복지국 장애인지원과장 代 서진희



[참고자료]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36호

##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과 공중보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육은아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13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육은아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2명

### ☐ 제안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과 공중보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동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지정 날짜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한 자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활동을 위해 연 평균 1천만원 미만 소요 예상되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기에 미첨부 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 [참고자료]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8.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낙시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 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 가. 일반도로
- 나. 자동차전용도로
- 다. 보행자전용도로
- 라. 보행자우선도로
- 마. 자전거전용도로
- 바. 고가도로
- 사.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물류터미널
- 다. 공영차고지
- 라. 공동차고지
-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 바. 복합환승센터
- 사. 환승센터

3. 광장

- 가. 교통광장
- 나. 일반광장
- 다. 경관광장
- 라. 지하광장
-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37호

##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무료공영주차장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에서 장기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안 제3조)
-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안 제4조)
-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안 제5조)
- 홍보(안 제6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전용호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14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전용호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7명

### ☐ 제안이유

- 무료공영주차장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에서 장기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안 제3조)
-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안 제4조)
-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안 제5조)
- 홍보(안 제6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5조
-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문화에 대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도로교통법」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근거하여 견인 및 조치 요건의 범위 확대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자 :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 [참고자료]

##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 □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38호

##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후관리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후관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7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장덕수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15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장덕수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후관리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후관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및 법 시행령 제3조,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동구에 설치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

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지원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현황과 평가 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공동이용시설 설치·정비·운영 현황
3. 사후관리지원 사업 추진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공동이용시설의 정비·운영·관리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도시국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참고자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39호

##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만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안 제5조)
- 홍보(안 제6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숙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16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김은숙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3명

### ☐ 제안이유

-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만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안 제5조)
- 홍보(안 제6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5조
- 「지역보건법」 제3조, 제11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6조의5, 제1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3.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들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
4. “학교”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비만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아동 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
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 [참고자료]

##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 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40호

##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모자보건사업, 임신부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 (육은아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17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육은아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2명

### ☐ 제안이유

-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구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모자보건사업, 임신부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모자보건법」 제2조, 제3조, 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

한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비 지원
4.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
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제6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임산부의 날 행사 및 모자보건 관련 사업들은 기 재정을 수반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당장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향후 사업 추가 시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후 비용추계 가능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 [참고자료]

##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12.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41호

##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의 위탁(안 제5조,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 (오용환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18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오용환·박정하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2명

### ☐ 제안이유

- 남동구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의 위탁(안 제5조,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지역보건법」 제3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남동구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 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회복 지원(이하 “정신건강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
2.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사업
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
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각급학교,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 [참고자료]

##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불안·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42호

##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정책추진에 있어 남동구 전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6조)
- 사업지원(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9조)
- 회의 및 수당(안 제10조, 안 제11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03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서점원 의원 외 2명

### ☐ 제안이유

- 정책추진에 있어 남동구 전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6조)
- 사업지원(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9조)
- 회의 및 수당(안 제10조, 안 제11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이란 남동구의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생활환경과 개발여건 등에서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남동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지원 대상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
2.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
4. 주거·교육·문화·복지·산업·경제·환경·재정·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공모 및 주민숙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4.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남동구의회의 의원

2.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균형발전 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방 종 원

## [참고자료]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43호

##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관련 단서 삭제(안 제4조제1항)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을 아니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4조제2항)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 제한 조항 신설 (안 제4조제5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사항(안 제7조제4항)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남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04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김재남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7명

### ☐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관련 단서 삭제(안 제4조제1항)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을 아니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4조제2항)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 제한 조항 신설 (안 제4조제5항)
-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사항(안 제7조제4항)

### ☐ 본 문 : “별 첨”

###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의 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3조, 제16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이상”을 “20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80%”를 “50%”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일반회계 규모의 1%를 초과하는 경우

2.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⑤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5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제4항 중 “두”를 “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환급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및 일부 개정 2024.7.1.)

⑤ · ⑥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

----- 50%-----

-----.

-----

-----.

⑤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5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한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방 종 원

## [참고자료]

##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

· 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44호

##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안 제4조)
-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안 제5조)
- 정산 지침 (안 제6조)
- 의회 보고 (안 제7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김재남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05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김재남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7명

### ☐ 제안이유

-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안 제4조)
-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안 제5조)
- 정산 지침 (안 제6조)
- 의회 보고 (안 제7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 제25조~제27조, 제30조,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출자·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출자·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 지침 등에 따른다.

제5조(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지침) 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방 종 원

## [참고자료]

##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출자금·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③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45호

##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2조)
- 문화예술교육 기본 원칙 (안 제3조)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
- 문화예술교육 지도·감독, 협력체계 구축 사항 (안 제7~8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이용우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06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이용우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7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2조)
- 문화예술교육 기본 원칙 (안 제3조)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
- 문화예술교육 지도·감독, 협력체계 구축 사항 (안 제7~8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5조의2, 제10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남동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

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소재의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교부받은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구청 각 부서간의 협업을 강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5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시
- 안 제6조(지원센터 지원)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후 재정지원 시, 재정 소요 예상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현재로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지원 규모에 대한 선검토가 필요하므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 향후 안 제5조, 안 제6조에 의거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지원센터 지원 규모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함

작성자 : 행정국    문화관광과장    노 송 희

## [참고자료]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⑤항 생략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②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46호

##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 거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관람 및 구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 (이철상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07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이철상 의원

찬 성 자 : 김재남 의원 외 4명

### ☐ 제안이유

- 남동구 거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관람 및 구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 본 문 : “별첨”

### ☐ 신 · 구조문대비표 : “없음”

### ☐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제10호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거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관람 및 구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와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2. “문화생활”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활동

나. 박물관, 전시시설 등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문화생활 관련 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청소년의 문화향유가 증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저소득청소년이 각자 취향 등에 따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저소득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 지원사업
  2. 문화생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이용 지원사업
  3. 문화생활 관련 교류 및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4. 문화생활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생활에 수반되는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문화생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저소득층 문화생활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6조(지원사업)에 따른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 보급, 시설의 확충 및 이용, 교류 및 동호회 활동,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사업 추진 시
- 동 조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에 수반되는 교통비 지원 시, 재정 소요 예상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권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현재로서는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의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지원 규모에 대한 선검토가 필요하므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 향후 안 제6조에 의거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시행 시, 사업 및 지원 규모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함

작성자 : 행정국    문화관광과장    노 송 희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47호

##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실시 방법을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교육실시 방법 정비 (제6조)
  -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 가능 명시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남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08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김재남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6명

☐ 제안이유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실시 방법을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육실시 방법 정비 (제6조)
  -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 가능 명시

☐ 본 문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참고자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2조, 제36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교육장소”를 “구청장은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장소”로,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법 제11조”를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도”를 “제3항에도”로 한다.

-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면 또는 비대면·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신 설><br><br>① <u>교육장소</u> 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u>한다</u> .<br><br>② 구청장은 <u>법 제11조</u> 에 따른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br><br>③ <u>제1항에도</u>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u>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면 또는 비대면·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br><br>② <u>구청장은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장소</u> -----<br>-----<br>----- 하여야 한다.<br><br>③ ----- <u>제3조</u> -----<br>-----<br>---. -----<br>-----<br>-----<br>-----<br><br>④ <u>제3항에도</u> -----<br>-----<br>-----<br>-----<br>-----. |

(별지 제2호 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행정국    문화관광과장    노 송 희

## [참고자료]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48호

##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복지향상 및 사회취약계층의 안정과 심신재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지원내용 (안 제3조)
- 지원절차 (안 제4조)
- 중복지원의 제한 (안 제5조)
- 지원중단 등 (안 제6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황규진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09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황규진·오용환의원  
 찬 성 자 : 서점원 의원 외 2명

### ☐ 제안이유

-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복지향상 및 사회취약계층의 안정과 심신재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지원내용 (안 제3조)
- 지원절차 (안 제4조)
- 중복지원의 제한 (안 제5조)
- 지원중단 등 (안 제6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제2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 제4조, 제1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 및 사회취약계층의 심신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

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남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제6조에 따른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개인별 연간 16만원 이내로 하며,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관내 동물병원(단, 반려동물의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동물병원이 있는 경우, 타 시·도 동물병원도 포함)에 방문하여 반려동물의 진료행위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의 종류 및 신청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접수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부정 수급이 의심될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구가 부담할 진료비는 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동물보호법」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조례안 제3조에서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진료비 지원 대상자
  -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취약계층 중 실제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원에 대한 조사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수시 변동 가능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자 수 산출은 불가능하므로 반려견을 동물등록(내장형)하고 기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 수 추정 및 비용추계 함.

| 산출근거                                                                                                      | 인원<br>(명) | 비고                  |
|-----------------------------------------------------------------------------------------------------------|-----------|---------------------|
|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총 인구                                                                                         | 504,601   | ▶ '23년 기준, 남동구 기본통계 |
|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34,631    | ▶ '23년 기준, 남동구 기본통계 |
|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인구 중 동물등록(내장형)된 반려견을 사육 중인 인구                                                                | 17,400    | ▶ '23년 기준           |
|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동물등록 된 반려견을 사육 중인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br>(17,400 * (34,631/504,601))<br>= 17,400 * 6% = 1,044 | 1,044     |                     |

**나. 추계 결과**

- 진료비 지원 관련 추계비용
  - 1,044명 \* 160천원 \* 1년 = 167,04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 재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재정경제국    농축수산과장    김 은 실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br>(‘26년) | 2차년도<br>(‘27년) | 3차년도<br>(‘28년) | 4차년도<br>(‘29년) | 5차년도<br>(‘30년) | 계       |
|-----------------------|-------|----------------|----------------|----------------|----------------|----------------|---------|
| 세 입                   |       |                |                |                |                |                |         |
|                       |       |                |                |                |                |                |         |
| 세 출                   |       | 167,040        | 167,040        | 167,040        | 167,040        | 167,040        | 835,200 |
| ○ 취약계층 반려동물<br>진료비 지원 |       | 167,040        | 167,040        | 167,040        | 167,040        | 167,040        | 835,200 |
| 재원 조달                 |       |                |                |                |                |                |         |
| 의존원<br>재원             | 소 계   |                |                |                |                |                |         |
|                       | 보조금   |                |                |                |                |                |         |
|                       | 국비    |                |                |                |                |                |         |
|                       | 시비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자체<br>수입              | 조정교부금 |                |                |                |                |                |         |
|                       | 소 계   | 167,040        | 167,040        | 167,040        | 167,040        | 167,040        | 835,200 |
|                       | 지방세   | 167,040        | 167,040        | 167,040        | 167,040        | 167,040        | 835,200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
| 기 금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타<br>(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참고자료]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8.(생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7.(생략)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비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⑦.(생략)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49호

##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 지역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차량 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안 제3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10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 의원 외 2명

### ☐ 제안이유

- 남동구 지역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차량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안 제3조)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 참고자료

- 「예비군법」 제14조의3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지역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17보병사단 제507여단 제47대대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지역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남동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남동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규정에 따른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시 재정 소요 예상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1) 남동구 지역예비군의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함
- 2) 「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제4호에 따라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지역 예비군 훈련 대상자 지원을 전제로 하며, 일 평균 훈련대상자 300명 중 대중교통을 이용해 훈련에 참가하는 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방법) 1일 필요한 차량 × 훈련 일수 × 차량 1대당 임차비용
- (결과)
  - 1차년도 : 5대(≒200명/45인승) × 25일 × 600,000원 = 75,000천원
  - 2차년도 : 5대(≒200명/45인승) × 25일 × 600,000원 = 75,000천원
  - 3차년도 : 5대(≒200명/45인승) × 25일 × 600,000원 = 75,000천원
  - 4차년도 : 5대(≒200명/45인승) × 25일 × 600,000원 = 75,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안전교육국    안전총괄과장    유 영 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    | 1차년도<br>(2026년) | 2차년도<br>(2027년) | 3차년도<br>(2028년) | 4차년도<br>(2029년) |  | 계       |
|---------------------|-------|----|-----------------|-----------------|-----------------|-----------------|--|---------|
| 세 입                 |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 세 출                 |       |    |                 |                 |                 |                 |  |         |
| 차량 임차비용             |       |    | 75,000          | 75,000          | 75,000          | 75,000          |  | 300,000 |
| 재원 조달               |       |    |                 |                 |                 |                 |  |         |
| 의존<br>재원            | 소 계   |    |                 |                 |                 |                 |  |         |
|                     | 보조금   | 국비 |                 |                 |                 |                 |  |         |
|                     |       | 시비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 자체<br>수입            | 소 계   |    | 75,000          | 75,000          | 75,000          | 75,000          |  | 300,000 |
|                     | 지방세   |    | 75,000          | 75,000          | 75,000          | 75,000          |  | 300,000 |
|                     | 세외수입  |    |                 |                 |                 |                 |  |         |
| 지 방 채               |       |    |                 |                 |                 |                 |  |         |
| 기 금                 |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기 타<br>(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 [참고자료]

##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6. 11. 30.>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유지의 지원

나. 사무실 신·개축 및 보수의 지원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가. 사무·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

나. 사무실 집기·비품의 지원

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가.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

나.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복지시설 설치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유지의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가.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의 지원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2) 차량·선박의 확보와 인원·물자 수송의 지원

3)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물자 확보 및 유지

나. 전투시설의 지원

1) 진지구축 자재·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2) 무기고·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 - 50호

## 남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9.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 안전 보장 및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책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관련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유경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111 |
|----------|------|

발의년월일 : 2025년 5월 29일

발 의 자 : 이유경 의원

찬 성 자 : 이연주 의원 외 7명

☐ 제안이유

- 남동구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 안전 보장 및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책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관련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동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남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등 피해자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방지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7조(여성폭력 예방교육)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7조(여성폭력 예방교육)에 따르는 교육에 예상되는 비용은  
약 1,300만원 내외으로 연간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이에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 2025년 본예산기준 여성가족과의 성인지, 성폭력, 양성평등 교육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액: 1,275만원

작성자 : 안전교육국    여성가족과장    김 현 수

[참고자료]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고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25-8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운연동 중로3-69호선 외  
2개노선) 실시계획인가 및 결정 실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5. 28.

남 동 구 청 장

1. 실시계획 인가 실효

| 노선명 |        |        | 사업시행지의<br>위치              | 사업의<br>종류          | 사업<br>명칭                              | 사업규모                                | 사업시<br>행자                                                    | 사업의<br>착공일 및<br>준공일           | 실시계획인가<br>실효사유                                                                                                                     | 편입<br>토지<br>조서 |
|-----|--------|--------|---------------------------|--------------------|---------------------------------------|-------------------------------------|--------------------------------------------------------------|-------------------------------|------------------------------------------------------------------------------------------------------------------------------------|----------------|
| 등급  | 류<br>별 | 번<br>호 |                           |                    |                                       |                                     |                                                              |                               |                                                                                                                                    |                |
| 중로  | 3      | 69     | 남동구 운연동<br>229-10번지<br>일원 | 도시계획<br>시설<br>(도로) | 운연동<br>중로3-69호선<br>도로개설공사             | L=900m,<br>B=12m,<br>A=19,117<br>㎡  | 남동구<br>청장<br>(도로과)<br><br>[인천<br>남동구<br>소래로<br>633(만<br>수동)] | 2020.05.28<br>~<br>2025.12.31 | 「국토의 계획<br>및 이용에 관한<br>법률」 제88조<br>제7항에 따라<br>실시계획 고시일<br>부터 5년 이내에<br>토지보상법 제<br>28조제1항에 따<br>른 재결산청을<br>하지 아니하여<br>실시계획 인가<br>실효 | 붙임2)<br>참조     |
| 소로  | 1      | 5      | 남동구 고잔동<br>159-2번지<br>일원  | 도시계획<br>시설<br>(도로) | 고잔동<br>159-2번지 일원<br>소1-5호선<br>도로개설공사 | L=152m,<br>B=10m,<br>A=1,653.7<br>㎡ |                                                              |                               |                                                                                                                                    |                |
| 소로  | 1      | 5      | 남동구 고잔동<br>522번지 일원       | 도시계획<br>시설<br>(도로) | 고잔동<br>522번지 일원<br>소1-5호선<br>도로개설공사   | L=170m,<br>B=12m,<br>A=1,895㎡       |                                                              |                               |                                                                                                                                    |                |
| 소로  | 1      | 7      | 남동구 고잔동<br>177-4번지<br>일원  | 도시계획<br>시설<br>(도로) | 고잔동<br>177-4번지 일원<br>소1-7호선<br>도로개설공사 | L=136m,<br>B=10m,<br>A=1,511.9<br>㎡ |                                                              |                               |                                                                                                                                    |                |

## 2.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br>(m) | 기점            | 종점                   | 사용<br>형태 | 주요<br>경과<br>지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br>(m) |          |           |               |                      |          |               |                             |                             |
| 폐지 | 중로 | 3  | 69  | 12        | 국지<br>도로 | 900       | 운연동<br>229-8  | 운연동<br>35-1          | 일반<br>도로 | -             | 인고 1995-63<br>(1995.04.15.) | 실효                          |
| 기정 | 소로 | 1  | 5   | 10        | 국지<br>도로 | 1,24<br>4 | 고잔동<br>519-40 | 논현동<br>738-9         | 일반<br>도로 | -             | 인고 1588<br>(1989.11.13.)    | -                           |
| 변경 | 소로 | 1  | 5   | 10        | 국지<br>도로 | 160       | 고잔동<br>155-40 | 고잔동<br>159-6         | 일반<br>도로 | -             | -                           | 부분실효에 따른<br>시점변경            |
| 신설 | 소로 | 1  | 201 | 10        | 국지<br>도로 | 167       | 고잔동<br>217-7  | 고잔동<br>174-4         | 일반<br>도로 | -             | -                           | 소로1-5호선<br>부분실효에 따른<br>노선분리 |
| 신설 | 소로 | 1  | 202 | 10        | 국지<br>도로 | 218       | 고잔동<br>306-14 | 고잔동<br>217-6         | 일반<br>도로 | -             | -                           | 소로1-5호선<br>부분실효에 따른<br>노선분리 |
| 신설 | 소로 | 1  | 203 | 10        | 국지<br>도로 | 312       | 고잔동<br>298-14 | 고잔동<br>306-26        | 일반<br>도로 | -             | -                           | 소로1-5호선<br>부분실효에 따른<br>노선분리 |
| 기정 | 소로 | 1  | 7   | 10        | 국지<br>도로 | 1,44<br>0 | 고잔동<br>174-47 | 고잔동<br>761-2         | 일반<br>도로 | -             | 인고 1588<br>(1989.11.13.)    | -                           |
| 변경 | 소로 | 1  | 7   | 10        | 국지<br>도로 | 471       | 소(국)<br>2-2호선 | 소(국)1-<br>8호선<br>종점부 | 일반<br>도로 | -             | -                           | 부분실효에 따른<br>시점변경            |
| 신설 | 소로 | 1  | 204 | 10        | 국지<br>도로 | 218       | 고잔동<br>409-29 | 고잔동<br>372-83        | 일반<br>도로 | -             | -                           | 소로1-7호선<br>부분실효에 따른<br>노선분리 |
| 신설 | 소로 | 1  | 205 | 10        | 국지<br>도로 | 577       | 고잔동<br>372-83 | 대(주)<br>3-75         | 일반<br>도로 | -             | -                           | 소로1-7호선<br>부분실효에 따른<br>노선분리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br>도로명 | 변경후<br>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중로3-69     | -          | 노선 폐지<br>-L=900m, B=12m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에 따른 실효         |
| 소로1-5      | 소로1-5      | 노선 연장 변경<br>-L=1,244m→160m, B=10m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에 따른 시점변경(노선축소) |
| 소로1-5      | 소로1-201    | 노선 분리<br>-L=167m, B=10m           | 소로1-5호선 부분 실효에 따른 노선 분리     |
| 소로1-5      | 소로1-202    | 노선 분리<br>-L=218m, B=10m           | 소로1-5호선 부분 실효에 따른 노선 분리     |
| 소로1-5      | 소로1-203    | 노선 분리<br>-L=312m, B=10m           | 소로1-5호선 부분 실효에 따른 노선 분리     |
| 소로1-7      | 소로1-7      | 노선 연장 변경<br>-L=1,244m→471m, B=10m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에 따른 시점변경(노선축소) |
| 소로1-7      | 소로1-204    | 노선 분리<br>-L=218m, B=10m           | 소로1-7호선 부분 실효에 따른 노선 분리     |
| 소로1-7      | 소로1-205    | 노선 분리<br>-L=577m, B=10m           | 소로1-7호선 부분 실효에 따른 노선 분리     |

나. 실효일자 : 2025. 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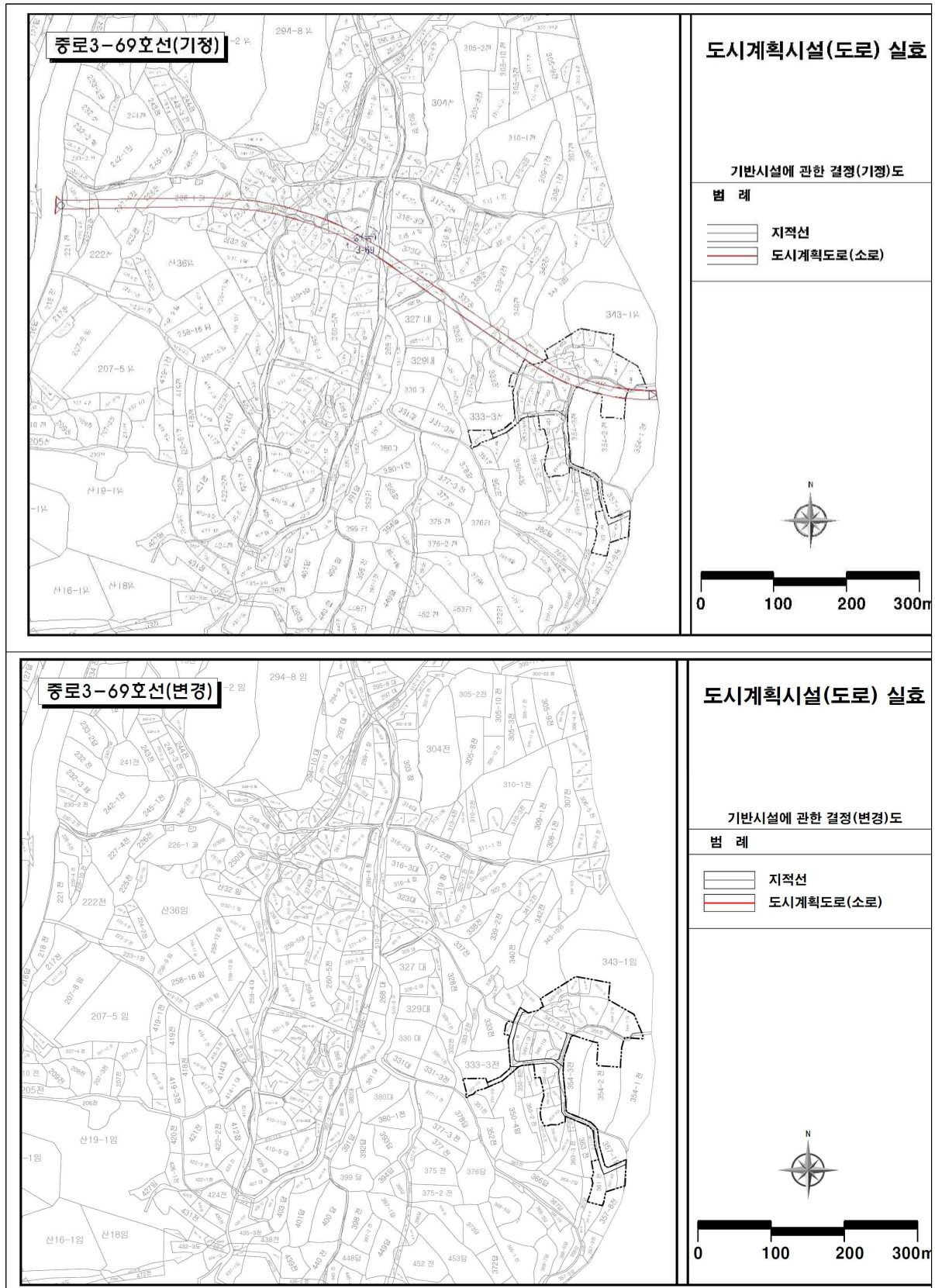
다.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 미시행

라.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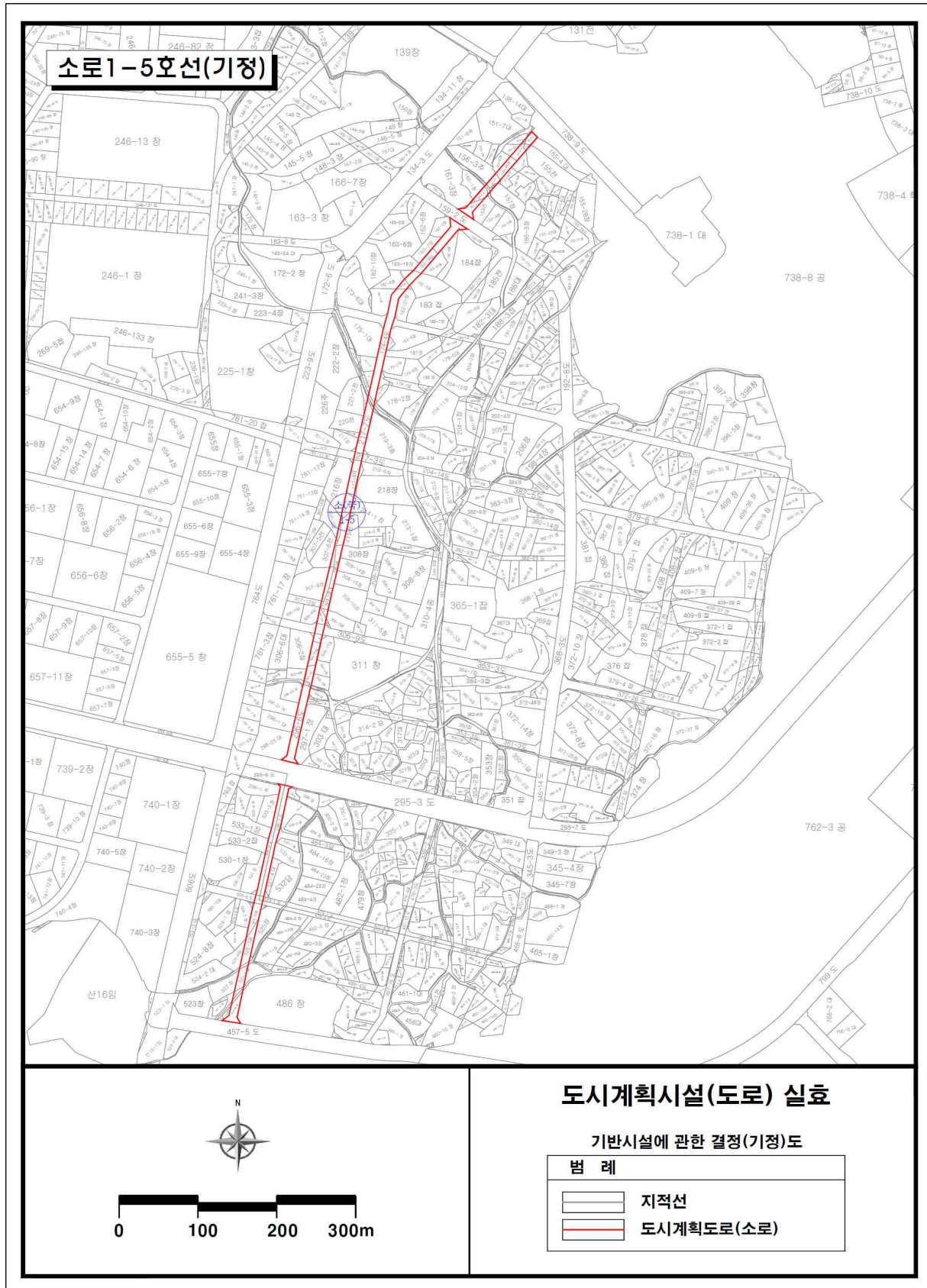
마. 관계도서는 남동구 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불임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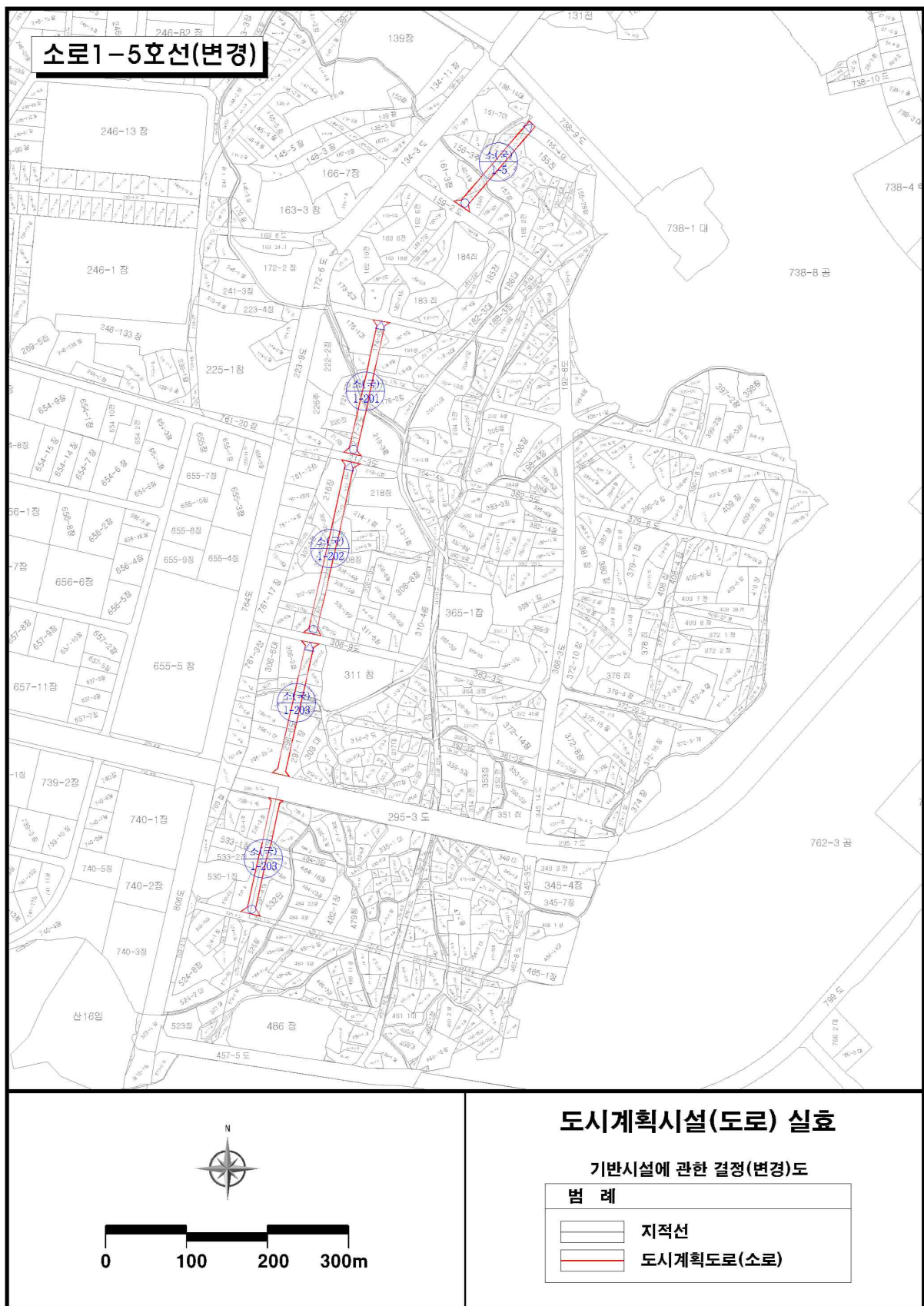
○ 중로3-69(운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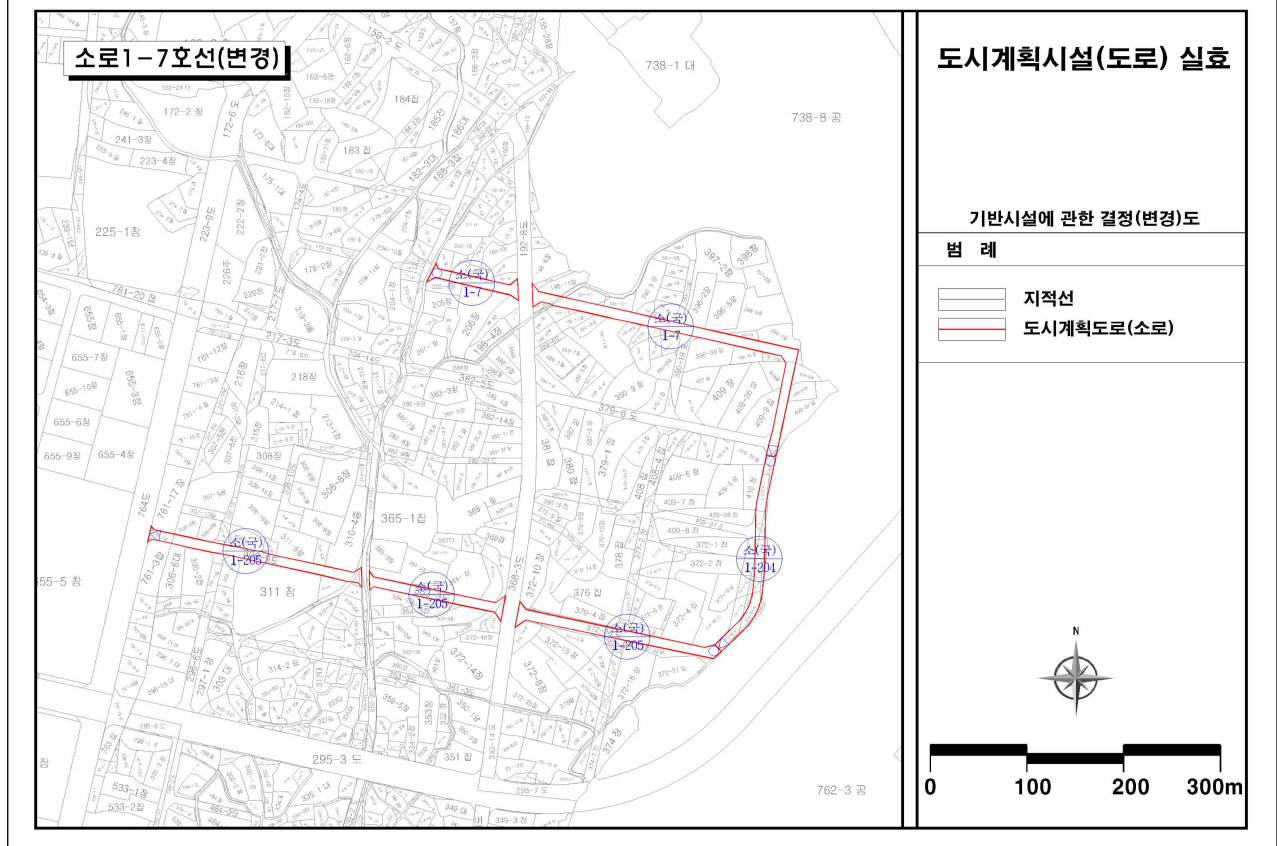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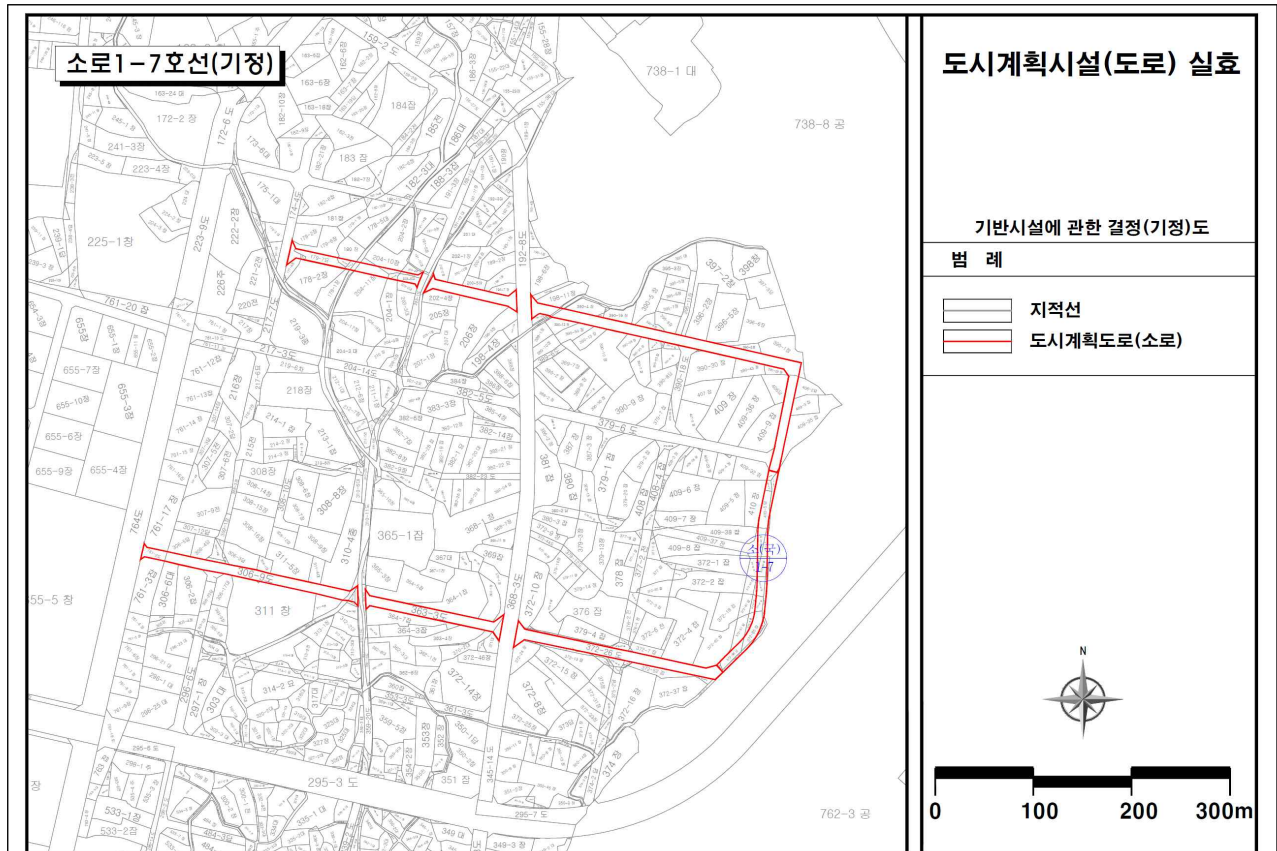
○ 소로1-5호선(고잔동)







## ○ 소로1-7호선(고잔동)





□ 불임2) 실시계획인가(실효) 편입토지조서

○ 운연동 중로3-69호선

| 일련<br>번호 | 동   | 지 번    | 지목 | 지적<br>(㎡) | 편입면적  |       |       | 소 유 자  |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          |
|----------|-----|--------|----|-----------|-------|-------|-------|--------|--------------------------------------------------|-------------|-------------------------|----------|
|          |     |        |    |           | 도로내   | 도로외   | 계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 리      |
| 1        | 운연동 | 229-10 | 답  | 758       | 56    |       | 56    | 한국○○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정자동)                         |             |                         |          |
| 2        | 운연동 | 229-8  | 전  | 451       | 133   | 38    | 171   | 한국○○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정자동)                          |             |                         |          |
| 3        | 운연동 | 229-11 | 전  | 49        | 8     | 5     | 13    | 이○○    | 만수서로37번길○○○(만수동)                                 |             |                         |          |
| 4        | 운연동 | 229-4  | 전  | 1,083     | 147   | 150   | 297   | 이○○    | 만수서로37번길○○○(만수동)                                 |             |                         |          |
| 5        | 운연동 | 228-5  | 전  | 970       | 299   | 134   | 433   | 백○○    | 서창동 ○○○                                          |             |                         |          |
|          |     |        |    |           |       |       |       | 이○○    | 인천 남동구 ○○○                                       |             |                         |          |
| 6        | 운연동 | 228-10 | 전  | 624       |       | 61    | 61    | 민○○    | 경기도 부천시소사로102번길○○○<br>(소사본동,청구아파트)               |             |                         |          |
| 7        | 운연동 | 228-4  | 전  | 226       | 149   | 39    | 188   | 이○○    | 연수 켄벤시아대로60,○○○<br>(송도동,송도푸르지오월드마크2단지)           |             |                         |          |
| 8        | 운연동 | 227-4  | 전  | 2,982     | 631   | 419   | 1,050 | 서○○    | 남동구 소래로677,○○○<br>(만수동,삼화아파트)                    |             |                         |          |
|          |     |        |    |           |       |       |       | 서○○    | 남구 인주대로418번길19○○○<br>(주안동,광명아파트)                 |             |                         |          |
|          |     |        |    |           |       |       |       | 서○○    |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27-8,○○○<br>(정왕동,시흥배곧신도시호반베르디움센트럴파크) |             |                         |          |
|          |     |        |    |           |       |       |       | 이○○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59,○○○(상현동,상현마을금호베스트빌1단지(아))      |             |                         |          |
| 9        | 운연동 | 226    | 전  | 1,081     | 242   | 158   | 400   | 전○○    | 부평구부평동70-5동아아파트○○○                               |             |                         |          |
| 10       | 운연동 | 225    | 전  | 446       |       | 17    | 17    | 추○○    | 운연동○○○                                           |             |                         |          |
| 11       | 운연동 | 226-1  | 과  | 4,097     | 1,015 | 1,729 | 2,744 | 이○○    | 남동구운연로○○○(운연동)                                   | 남동○○조<br>합  | 남동구장승로○○○(만수동)<br>구월남지점 | 근저당<br>권 |
| 12       | 운연동 | 산37-1  | 임  | 298       |       | 7     | 7     | 추○○    | 운연동○○○                                           |             |                         |          |

|    |     |       |   |       |     |     |     |     |                                            |              |                          |          |
|----|-----|-------|---|-------|-----|-----|-----|-----|--------------------------------------------|--------------|--------------------------|----------|
| 13 | 운연동 | 226-3 | 임 | 200   |     | 19  | 19  | 이○○ | 인천 간석동 ○○○                                 |              |                          |          |
| 14 | 운연동 | 산36   | 임 | 7,934 |     | 65  | 65  | 서○○ | 남동구 음실서로○○○(운연동)                           |              |                          |          |
| 15 | 운연동 | 251-1 | 전 | 506   |     | 228 | 228 | 서○○ | 남동구 음실서로○○○(운연동)                           |              |                          |          |
| 16 | 운연동 | 산39   | 임 | 793   | 185 | 527 | 712 | 박○○ | 경기도시흥시신천3길○○○(신천동)                         |              |                          |          |
| 17 | 운연동 | 251   | 전 | 701   | 174 | 383 | 557 | 박○○ | 경기도시흥시신천3길○○○(신천동)                         |              |                          |          |
| 18 | 운연동 | 250   | 대 | 1,071 | 398 | 274 | 672 | 서○○ | 운연동○○○                                     |              |                          |          |
| 19 | 운연동 | 249-1 | 대 | 404   |     | 63  | 63  | 이○○ | 남동구 운연로○○○(운연동)                            |              |                          |          |
| 20 | 운연동 | 254-1 | 대 | 590   |     | 49  | 49  | 이○○ | 남동구 음실서로○○○(운연동)                           |              |                          |          |
| 21 | 운연동 | 253-2 | 도 | 42    |     | 3   | 3   | 이○○ | 웅진군백령면장촌길○○○                               | 주식회사<br>○○은행 |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br>○(구월동지점) | 근저당<br>권 |
| 22 | 운연동 | 253   | 대 | 533   |     | 50  | 50  | 이○○ | 웅진군백령면장촌길○○○                               | 주식회사<br>○○은행 |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br>○(구월동지점) | 근저당<br>권 |
| 23 | 운연동 | 253-1 | 대 | 72    | 72  |     | 72  | 이○○ | 웅진군백령면장촌길○○○                               | 주식회사<br>○○은행 |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br>○(구월동지점) | 근저당<br>권 |
| 24 | 운연동 | 254-4 | 대 | 213   | 213 |     | 213 | 이○○ | 남동구 음실서로○○○(운연동)                           |              |                          |          |
| 25 | 운연동 | 255   | 대 | 433   |     | 5   | 5   | 서○○ | 남동구 음실서로○○○(운연동)                           | 남동○○조<br>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br>○○○     | 근저당<br>권 |
| 26 | 운연동 | 255-1 | 대 | 96    | 96  |     | 96  | 서○○ | 경기도시흥시<br>수인로3395번길19-1,○○○<br>(신천동,신천씨티빌) |              |                          |          |
|    |     |       |   |       |     |     |     | 서○○ | 남구낙섬중로102,○○○<br>(용현동,유원용현아파트)             |              |                          |          |
| 27 | 운연동 | 252-4 | 도 | 1,640 | 12  |     | 12  | 남동구 |                                            |              |                          |          |
| 28 | 운연동 | 249-2 | 대 | 382   |     | 3   | 3   | 김○○ | 부평구 경인로1012번길○○○(부평동)                      |              |                          |          |
| 29 | 운연동 | 249-7 | 대 | 19    | 19  |     | 19  | 김○○ | 부평구 경인로1012번길○○○(부평동)                      |              |                          |          |
| 30 | 운연동 | 254-2 | 대 | 159   |     | 2   | 2   | 김○○ | 부평구 경인로1012번길○○○(부평동)                      |              |                          |          |
| 31 | 운연동 | 254-6 | 대 | 14    | 14  |     | 14  | 김○○ | 부평구 경인로1012번길○○○(부평동)                      |              |                          |          |
| 32 | 운연동 | 254-5 | 도 | 45    | 45  |     | 45  | 남동구 |                                            |              |                          |          |
| 33 | 운연동 | 254-3 | 대 | 149   | 149 |     | 149 | 남동구 |                                            |              |                          |          |

|    |     |        |   |       |     |     |     |       |                                        |             |                                      |          |
|----|-----|--------|---|-------|-----|-----|-----|-------|----------------------------------------|-------------|--------------------------------------|----------|
| 34 | 운연동 | 506-10 | 도 | 33    | 6   |     | 6   | 건설교통부 |                                        |             |                                      |          |
| 35 | 운연동 | 256-2  | 도 | 78    | 24  |     | 24  | 남동구   |                                        |             |                                      |          |
| 36 | 운연동 | 256    | 대 | 254   |     | 21  | 21  | 황○○   | 남동구 음실서로○○○(운연동)                       |             |                                      |          |
| 37 | 운연동 | 256-1  | 대 | 98    | 98  |     | 98  | 서○○   | 운연동○○○                                 |             |                                      |          |
| 38 | 운연동 | 283-2  | 대 | 576   |     | 31  | 31  | 이○○   | 남동구 만경로21-4,○○○(만수동)                   | ○○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br>(을지로2가) 만수동지점        | 근저당<br>권 |
| 39 | 운연동 | 283-7  | 대 | 371   | 371 |     | 371 | 이○○   | 남동구 만경로21-4,○○○(만수동)                   | ○○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br>(을지로2가) 만수동지점            | 근저당<br>권 |
|    |     |        |   |       |     |     |     | 남동구청  |                                        |             |                                      |          |
| 40 | 운연동 | 275    | 대 | 407   | 34  | 27  | 61  | 유○○   | 남동구 운연로○○○(운연동)                        | 남동○○조<br>합  | 인천 남동구 만수동 ○○○                       | 근저당<br>권 |
| 41 | 운연동 | 506    | 도 | 4,143 | 208 | 117 | 325 | 건설교통부 |                                        |             |                                      |          |
| 42 | 운연동 | 274    | 대 | 506   |     | 8   | 8   | 김○○   | 남동구운연동○○○                              |             |                                      |          |
| 43 | 운연동 | 283-14 | 도 | 16    |     | 8   | 8   | 이○○   | 남동구 만경로21-4○○○(만수동)                    | ○○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br>(을지로가 2) 만수동지점       | 근저당<br>권 |
| 44 | 운연동 | 277    | 대 | 50    | 34  | 16  | 50  | 재무부   |                                        |             |                                      |          |
| 45 | 운연동 | 278    | 대 | 216   |     | 54  | 54  | 박○○   | 남동구운연로○○○(운연동)                         | 인천○○조<br>합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br>○○○ (구월지점)           | 근저당<br>권 |
| 46 | 운연동 | 278-1  | 답 | 287   | 262 | 25  | 287 | 유○○   | 남동구운연동○○○                              |             |                                      |          |
| 47 | 운연동 | 276    | 대 | 49    |     | 19  | 19  | 남동구청  |                                        |             |                                      |          |
| 48 | 운연동 | 276-1  | 대 | 60    | 60  |     | 60  | 남동구청  |                                        |             |                                      |          |
| 49 | 운연동 | 273    | 대 | 614   | 1   | 9   | 10  | 한○○   | 서울특별시 양천구목동동로430,○○○<br>(목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 | 주식회사○<br>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br>○○○(을지로2가)문래동지<br>점 |          |
| 50 | 운연동 | 279    | 전 | 1,398 | 310 | 136 | 446 | 김○○   | 남동구 백범로○○○(간석동)                        |             |                                      |          |
| 51 | 운연동 | 272-1  | 창 | 700   |     | 132 | 132 | 민○○   | 남동구 서창남로17,○○○<br>(서창동,인천서창엘에이지11단지)   | 주식회사○<br>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br>(회현동1가)의왕지점          | 근저당<br>권 |
| 52 | 운연동 | 272-3  | 답 | 132   | 132 |     | 132 | 민○○   | 남동구 서창남로17,○○○<br>(서창동,인천서창엘에이지11단지)   | 주식회사○<br>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br>(회현동1가)의왕지점          | 근저당<br>권 |
| 53 | 운연동 | 280-4  | 창 | 1,230 | 225 | 70  | 295 | 윤○○   | 남동구운연동○○○                              |             |                                      |          |

|    |     |        |   |       |     |    |     |             |                                                      |             |                                     |          |
|----|-----|--------|---|-------|-----|----|-----|-------------|------------------------------------------------------|-------------|-------------------------------------|----------|
| 54 | 운연동 | 510-4  | 구 | 218   |     | 7  | 7   | 농림축산<br>식품부 |                                                      |             |                                     |          |
| 55 | 운연동 | 510-11 | 구 | 1,267 |     | 26 | 26  | 농림축산<br>식품부 |                                                      |             |                                     |          |
| 56 | 운연동 | 510-7  | 구 | 674   | 22  |    | 22  | 농림축산<br>식품부 |                                                      |             |                                     |          |
| 57 | 운연동 | 510    | 구 | 157   |     | 2  | 2   | 농림축산<br>식품부 |                                                      |             |                                     |          |
| 58 | 운연동 | 510-10 | 구 | 87    | 87  |    | 87  | 농림축산<br>식품부 |                                                      |             |                                     |          |
| 59 | 운연동 | 316-7  | 도 | 466   | 25  |    | 25  | 남동구청        |                                                      |             |                                     |          |
| 60 | 운연동 | 323    | 대 | 1,279 |     | 24 | 24  | 이○○         |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범안로 96번길<br>23,○○○<br>(범박동,부천힐스테이트4단지아파트) | ○○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br>○○○(을지로2가)<br>남시화지점 | 근저당<br>권 |
| 61 | 운연동 | 323-1  | 도 | 236   | 236 |    | 236 | 남동구청        |                                                      |             |                                     |          |
|    |     |        |   |       |     |    |     | 이○○         | 경기도<br>부천시소사고범안로96번길○○○(범박동,<br>부천힐스테이트4단지아파트)       | ○○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br>○○○(을지로2가)<br>남시화지점 | 근저당<br>권 |
| 62 | 운연동 | 323-5  | 도 | 100   | 44  |    | 44  | 남동구청        |                                                      |             |                                     |          |
| 63 | 운연동 | 323-4  | 답 | 14    |     | 2  | 2   | 이○○         | 남동구 음실로○○○(운연동)                                      | ○○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br>○○○(을지로2가)남시화지<br>점 | 근저당<br>권 |
|    |     |        |   |       |     |    |     | 남동구청        |                                                      |             |                                     |          |
| 64 | 운연동 | 324-1  | 대 | 521   | 236 | 44 | 280 | 고○○         | 경기도구리시장자호수길125○○○<br>(토평동,토평마을이편한세상)                 | 주식회사○<br>은행 | 대구광역시 수성구<br>달구벌대로○○○<br>(수성동2가)    | 근저당<br>권 |
| 65 | 운연동 | 324-6  | 창 | 380   |     | 32 | 32  | 허○○         | 부산광역시<br>연제구황령산로503번길○○○(연산동)                        | 주식회사○<br>은행 | 대구광역시 수성구<br>수성동2가 ○○○              | 근저당<br>권 |
| 66 | 운연동 | 324-7  | 답 | 238   | 238 |    | 238 | 허○○         | 부산광역시<br>연제구황령산로503번길○○○(연산동)                        | 주식회사○<br>은행 | 대구광역시 수성구<br>수성동2가 ○○○              | 근저당<br>권 |
| 67 | 운연동 | 324-2  | 대 | 616   |     | 20 | 20  | 허○○         | 부산광역시<br>연제구황령산로503번길○○○연산동)                         | 주식회사○<br>은행 | 대구광역시 수성구<br>수성동2가 ○○○              | 근저당<br>권 |
| 68 | 운연동 | 325-1  | 답 | 190   | 169 | 21 | 190 | 이○○         | 남구성성로129번길○○○(학익동)                                   |             |                                     |          |
| 69 | 운연동 | 325    | 대 | 761   |     | 40 | 40  | 이○○         | 남구성성로129번길○○○(학익동)                                   |             |                                     |          |
| 70 | 운연동 | 325-2  | 도 | 45    |     | 5  | 5   | 이○○         | 남구성성로129번길○○○(학익동)                                   |             |                                     |          |

|    |     |       |   |       |     |     |       |        |                                       |              |                                      |          |
|----|-----|-------|---|-------|-----|-----|-------|--------|---------------------------------------|--------------|--------------------------------------|----------|
| 71 | 운연동 | 507   | 도 | 3,160 | 161 | 165 | 326   | 건설교통부  |                                       |              |                                      |          |
| 72 | 운연동 | 326   | 대 | 764   | 267 | 87  | 354   | 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길마로 70.○○○<br>(효성동, 현대아파트)  |              |                                      |          |
|    |     |       |   |       |     |     |       | 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br>361.○○○(삼곡동, 한화아파트)  |              |                                      |          |
|    |     |       |   |       |     |     |       | 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br>302.○○○(연수동, 유천아파트) |              |                                      |          |
| 73 | 운연동 | 328-3 | 전 | 346   | 13  | 37  | 50    | 정○○    | 남동구장자북로47.○○○(장수동, 한별렉스<br>힐아파트)      | ○○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br>을지로○○○<br>(을지로2가) 남동중앙지점 | 근저당<br>권 |
| 74 | 운연동 | 328   | 전 | 2,401 | 225 | 146 | 371   | 서○○    | 경기도시흥시 은행로○○○(은행동, 시흥은<br>행4차푸르지오)    | ○○조합         |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br>○○○(대야동)              | 근저당<br>권 |
| 75 | 운연동 | 337   | 전 | 2,387 | 634 | 537 | 1,171 | 이○○    | 경기도시흥시 은행로233.○○○(대야동, 늘<br>푸른벽산아파트)  | 남동○○조<br>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br>○○○                 | 근저당<br>권 |
| 76 | 운연동 | 340   | 전 | 3,094 | 21  | 108 | 129   | 이○○    | 경기도시흥시 복지로39-10,○○○<br>(대야동)          | ○○조합         |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br>39-10,○○○(대야동)        | 근저당<br>권 |
| 77 | 운연동 | 336   | 전 | 664   | 236 | 283 | 519   | 서○○    | 서울시관악구신림동○○○                          |              |                                      |          |
| 78 | 운연동 | 343-8 | 전 | 892   | 147 | 158 | 305   | 김○○    | 남동구음실서로○○○(운연동)                       | 남동○○조<br>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br>○○○                 | 근저당<br>권 |
| 79 | 운연동 | 343-7 | 전 | 1,025 | 412 | 184 | 596   | 김○○    | 남동구음실서로○○○(운연동)                       | 남동○○조<br>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br>○○○                 | 근저당<br>권 |
| 80 | 운연동 | 343-6 | 전 | 892   | 317 | 224 | 541   | 추○○    | 부평구삼산동465-1대덕리치아노○○○                  | 안양지구○<br>○조합 | 경기도 만안구 안양로<br>○○○ (안양동) 주사무소        | 근저당<br>권 |
| 81 | 운연동 | 343-3 | 임 | 327   | 40  | 28  | 68    | 한산○○종중 | 운연동○○○                                |              |                                      | —        |
| 82 | 운연동 | 347-1 | 창 | 331   |     | 33  | 33    | 추장○○   | 부평구삼산동465-1대덕리치아노○○○                  | 안양지구○<br>○조합 | 경기도 만안구 안양로<br>○○○ (안양동) 주사무소        | 근저당<br>권 |
| 83 | 운연동 | 347-2 | 도 | 241   |     | 13  | 13    | 추○○    | 부평구삼산동465-1대덕리치아노○○○                  | 안양지구○<br>○조합 | 경기도 만안구 안양로<br>○○○ (안양동) 주사무소        | 근저당<br>권 |
| 84 | 운연동 | 347-5 | 전 | 69    |     | 20  | 20    | 강○○    | 경기도시흥시신천로44번길12,○○○(신천<br>동)          | 부천지구○<br>○조합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br>삼곡로○○○<br>(삼곡본동)역곡지점  | 근저당<br>권 |
| 85 | 운연동 | 347   | 대 | 349   |     | 4   | 4     | 강○○    | 경기도시흥시신천로44번길12,○○○(신천<br>동)          | 부천지구○<br>○조합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br>삼곡로○○○<br>(삼곡본동)역곡지점  | 근저당<br>권 |

|     |     |       |   |       |        |       |        |     |                                      |              |                                      |  |
|-----|-----|-------|---|-------|--------|-------|--------|-----|--------------------------------------|--------------|--------------------------------------|--|
| 86  | 운연동 | 347-3 | 전 | 799   | 739    |       | 739    | 추○○ | 부평구삼산동465-1대덕리치아노○○○                 | 안양지구○<br>○조합 | 경기도 만안구<br>안양로○○○(안양동)<br>주사무소       |  |
| 87  | 운연동 | 347-4 | 창 | 505   |        | 16    | 16     | 추○○ | 부평구삼산동465-1대덕리치아노○○○                 | 안양지구○<br>○조합 | 경기도 만안구 안양로<br>○○○(안양동) 주사무소         |  |
| 88  | 운연동 | 347-6 | 전 | 149   |        | 21    | 21     | 강○○ | 경기도시흥시신천로44번길12,○○○<br>(신천동)         | 부천지구○<br>○조합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br>삼곡로 ○○○<br>(삼곡본동)역곡지점 |  |
| 89  | 운연동 | 355   | 전 | 377   | 164    | 56    | 220    | 김○○ | 남동구운연동○○○                            |              |                                      |  |
| 90  | 운연동 | 354-3 | 전 | 3,054 | 231    | 9     | 240    | 김○○ | 남동구운연동○○○                            |              |                                      |  |
| 91  | 운연동 | 354-2 | 전 | 5,580 | 397    | 12    | 409    | 김○○ | 부평구 부평동○○○                           |              |                                      |  |
| 92  | 운연동 | 344-4 | 도 | 41    | 23     | 3     | 26     | 최○○ | 운연동○○○                               |              |                                      |  |
| 93  | 운연동 | 344-6 | 도 | 10    |        | 2     | 2      | 최○○ | 운연동○○○                               |              |                                      |  |
| 94  | 운연동 | 344-1 | 대 | 886   |        | 7     | 7      | 최○○ | 운연동○○○                               |              |                                      |  |
| 95  | 운연동 | 344-7 | 도 | 12    |        | 2     | 2      | 최○○ | 운연동○○○                               |              |                                      |  |
| 96  | 운연동 | 354-1 | 전 | 777   | 311    | 55    | 366    | 김○○ | 남동구운연동○○○                            |              |                                      |  |
| 97  | 운연동 | 356-2 | 전 | 2,073 | 1      | 6     | 7      | 김○○ | 남동구운연동○○○                            |              |                                      |  |
| 98  | 운연동 | 356-1 | 전 | 3,299 | 165    | 122   | 287    | 김○○ | 남동구운연동○○○                            |              |                                      |  |
| 99  | 운연동 | 326-2 | 도 | 41    |        | 5     | 5      | 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길마로 70.○○○<br>(효성동, 현대아파트) |              |                                      |  |
|     |     |       |   |       |        |       |        | 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br>361.○○○(산곡동,한화아파트)  |              |                                      |  |
|     |     |       |   |       |        |       |        | 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br>302.○○○(연수동,유천아파트) |              |                                      |  |
| 100 | 운연동 | 346-1 | 대 | 427   |        | 9     | 9      | 김○○ | 남동구 구월동 북개서로 ○○○                     |              |                                      |  |
| 101 | 운연동 | 346-2 | 도 | 55    | 55     |       | 55     | 김○○ | 남동구 구월동 북개서로 ○○○                     |              |                                      |  |
| 102 | 운연동 | 346-3 | 도 | 10    |        | 2     | 2      | 김○○ | 남동구 구월동 북개서로 ○○○                     |              |                                      |  |
| 합계  |     |       |   |       | 11,438 | 7,679 | 19,117 |     |                                      |              |                                      |  |

## ○ 고잔동 159-2번지 일원 소로1-5호선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br>(㎡) | 편입면적<br>(㎡) |     | 소계 (㎡) | 잔여면적<br>(㎡) | 소 유 자           |                                          | 관 계 자      |                                |               | 비<br>고 |
|-----|-----|--------|----|-------------|-------------|-----|--------|-------------|-----------------|------------------------------------------|------------|--------------------------------|---------------|--------|
|     |     |        |    |             | 도로내         | 도로외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소유권<br>이외의 권리 |        |
| 1   | 고잔동 | 159-2  | 도  | 3,271       | 506         |     | 506    | 2,765       | 남동구             | -                                        |            |                                |               |        |
| 2   | 고잔동 | 184-1  | 전  | 4           | 4           |     | 4      | 0           | 김○○<br>외 3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4-7<br>서초4차우성아파트 ○○○      |            |                                |               |        |
| 3   | 고잔동 | 184    | 잡  | 2,651       |             | 1   | 1      | 2,650       | 김○○<br>외 4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4-7<br>서초4차우성아파트 ○○○      |            |                                |               |        |
| 4   | 고잔동 | 162-8  | 잡  | 641         |             | 3   | 3      | 638         | 장○○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산59-1<br>서초4차우성아파트 ○○○       |            |                                |               |        |
| 5   | 고잔동 | 162-2  | 장  | 474         |             | 23  | 23     | 452         | 장○○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산59-1<br>서초4차우성아파트 ○○○       |            |                                |               |        |
| 6   | 고잔동 | 163-7  | 장  | 513         |             | 12  | 12     | 501         | 서○○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87-12<br>북아현아파트 ○○○       | ○○은행       | 서울시 중구 을지로○○○<br>(을지로2가,연수지점)  | 근저당권          |        |
| 7   | 고잔동 | 163-19 | 답  | 352         | 352         |     | 352    | 0           | ○○기업(주)<br>외 2인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 ○○은행       | 서울시 중구 을지로○○○<br>(을지로2가,연수지점)  | 근저당권          |        |
| 8   | 고잔동 | 163-20 | 장  | 535         |             | 4   | 4      | 531         | ○○기업(주)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            |                                |               |        |
| 9   | 고잔동 | 162-3  | 전  | 1,243       | 186         | 24  | 210    | 1,033       | 서○○             | 용인시 죽전동 1116<br>죽전마을현대홈타운4차 ○○○          | 남동○○<br>조합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 근저당권<br>저당권   |        |
| 10  | 고잔동 | 182-28 | 도  | 113         | 113         |     | 113    | 0           | 신○○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563-2<br>동보아파트 ○○○            |            |                                |               |        |
| 11  | 고잔동 | 182-21 | 장  | 659         |             | 3   | 3      | 656         | 이○○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br>이현로30번길 7<br>○○○(보정동,○○○) | ○○은행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br>(을지로2가,연수지점) | 근저당권          |        |
| 12  | 고잔동 | 174-4  | 도  | 2,844       | 424         |     | 424    | 2,421       | 남동구             | -                                        |            |                                |               |        |
| 합 계 |     |        |    | 13,300      | 1,584       | 69  | 1,654  | 11,647      |                 |                                          |            |                                |               |        |

## ○ 고잔동 522번지 일원 소로1-5호선

| 연<br>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br>(㎡) | 편입면적<br>(㎡) | 잔여면적(㎡) | 소 유 자     |                      | 권 계 자    |                          |               | 비<br>고 |
|--------|-----|--------|----|-------------|-------------|---------|-----------|----------------------|----------|--------------------------|---------------|--------|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소유권<br>이외의 권리 |        |
| 1      | 고잔동 | 519-26 | 임  | 30          | 1           | 29      | (주)생*****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 **  |          |                          |               |        |
| 2      | 고잔동 | 519-29 | 임  | 447         | 370         | 77      | (주)생*****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 **  |          |                          |               |        |
| 3      | 고잔동 | 586-28 | 도  | 1,957       | 159         | 1,798   | 국(국토교통부)  | -                    |          |                          |               |        |
| 4      | 고잔동 | 521-1  | 전  | 361         | 64          | 297     | (주)생*****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 **  |          |                          |               |        |
| 5      | 고잔동 | 522    | 답  | 1,488       | 396         | 1,092   | 유**       | 인천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 | 유***주식회사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 **       | 전세권           |        |
| 6      | 고잔동 | 525-3  | 답  | 484         | 484         | 0       | 김** 외 1인  |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   | 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br>*** | 근저당권          |        |
| 7      | 고잔동 | 524-12 | 답  | 399         | 399         | 0       | 박** 외 5인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   |          |                          |               |        |
| 8      | 고잔동 | 525-2  | 답  | 7           | 7           | 0       | 김** 외 1인  |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   |          |                          |               |        |
| 9      | 고잔동 | 531-2  | 답  | 19          | 15          | 4       | 오**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   |          |                          |               |        |
| 합 계    |     |        |    | 5,192       | 1,895       | 3,297   |           |                      |          |                          |               |        |



## ○ 고잔동 177-4번지 일원 소로1-7호선

| 연번 | 지번  | 지목     | 지적<br>면적<br>(㎡) | 편입면적<br>(㎡) |     | 소계<br>(㎡) | 잔여면적<br>(㎡) | 소유자         |                                              | 관계자  |                                 |                  | 비고 |
|----|-----|--------|-----------------|-------------|-----|-----------|-------------|-------------|----------------------------------------------|------|---------------------------------|------------------|----|
|    |     |        |                 | 도로내         | 도로외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소유권<br>이외의<br>권리 |    |
| 1  | 고잔동 | 174-4  | 도               | 2,844       | 142 | 142       | 2,702       | 남동구         | -                                            |      |                                 |                  |    |
| 2  | 고잔동 | 179-6  | 장               | 783         |     | 26        | 756         | 진○○         | 경기도 부평구 마장로 121,<br>○○○(산곡동,현대아파트)           |      |                                 |                  |    |
| 3  | 고잔동 | 177-4  | 전               | 170         |     | 2         | 168         | 박○○<br>외 2인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114<br>햇빛마을벽산아파트 ○○○            |      |                                 |                  |    |
| 4  | 고잔동 | 178-8  | 전               | 19          | 19  | 19        | 0           | 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6-1<br>진달래마을 ○○○            |      |                                 |                  |    |
| 5  | 고잔동 | 179-7  | 묘               | 392         | 392 | 392       | 0           | 진○○         | 경기도 부천시 산곡동 산 37-4<br>현대아파트 ○○○              |      |                                 |                  |    |
| 6  | 고잔동 | 178-2  | 장               | 1,398       |     | 17        | 1,381       | 조○○         |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56,<br>○○○(상동,진달래마을)             | ○○은행 | 서울시 중구 통일로 ○○○<br>(충정로1가,○○○)   | 근저당권             |    |
| 7  | 고잔동 | 180-5  | 대               | 69          | 69  | 69        | 0           | 고○○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11번길 10-7,<br>○○○(신봉동. ○○○)  |      |                                 |                  |    |
| 8  | 고잔동 | 180    | 장               | 468         |     | 18        | 449         | 고○○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11번길 10-7,<br>○○○(신봉동. ○○○)  |      |                                 |                  |    |
| 9  | 고잔동 | 178-1  | 장               | 579         |     | 11        | 568         | 양○○<br>외 1인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71,<br>○○○ (상동,반달마을)             | ○○은행 | 서울시 중구 소공로 ○○<br>(회현동1가,○○○)    | 근저당권             |    |
| 10 | 고잔동 | 178-12 | 전               | 50          | 50  | 50        | 0           | 고○○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11번길 10-7,<br>○○○ (신봉동. ○○○) |      |                                 |                  |    |
| 11 | 고잔동 | 204-18 | 도               | 38          |     | 0         | 38          | 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136,<br>○○○(상동,곰동산)           | ○○은행 | 서울시 중구남대문로○○○<br>(을지로2가,학익동지점)  | 근저당권             |    |
| 12 | 고잔동 | 586-63 | 도               | 3,145       | 42  | 14        | 56          | 국           | -                                            |      |                                 |                  |    |
| 13 | 고잔동 | 204-11 | 장               | 2,035       | 282 | 30        | 313         | 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136,<br>○○○(상동,곰동산)           | ○○은행 | 서울시 중구남대문로○○○<br>(을지로2가,학익동지점)  | 근저당권             |    |
| 14 | 고잔동 | 204-10 | 장               | 867         | 75  | 6         | 81          | ㈜○○<br>에프디  | 인천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28번길<br>○○○(고잔동)               | ○○은행 | 서울시 중구 을지로○○○<br>(을지로2가,남동공단지점) | 근저당권             |    |

|     |     |        |   |        |       |     |       |        |     |                                          |      |                                |      |  |
|-----|-----|--------|---|--------|-------|-----|-------|--------|-----|------------------------------------------|------|--------------------------------|------|--|
| 15  | 고잔동 | 204-12 | 전 | 60     | 60    |     | 60    | 0      | 박○○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번길 35<br>○○○ (송도동, ○○○) |      |                                |      |  |
| 16  | 고잔동 | 203-6  | 대 | 59     | 59    |     | 59    | 0      | 진○○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      |                                |      |  |
| 17  | 고잔동 | 203-4  | 대 | 121    |       | 13  | 13    | 108    | 진○○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                          |      |                                |      |  |
| 18  | 고잔동 | 203-5  | 대 | 167    | 167   |     | 167   | 0      | 최○○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서로 39,<br>○○○(가경동, ○○○)   | ○○은행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br>○○○ (광명사거리지점) | 근저당권 |  |
| 19  | 고잔동 | 203-2  | 대 | 192    |       | 18  | 18    | 175    | 최○○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서로 39,<br>○○○(가경동, ○○○)   | ○○은행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br>○○○ (광명사거리지점) | 근저당권 |  |
| 합 계 |     |        |   | 13,455 | 1,358 | 154 | 1,512 | 11,943 |     |                                          |      |                                |      |  |